

第250回國會
(定期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11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4年12月7日(火)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수능시험부정행위관련보고
2.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4. 教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
5.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
6.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7.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복기왕 의원 발의)
8.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9.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조배숙 의원 발의)
10.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11.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지병문 의원 발의)

審查된案件

1. 수능시험부정행위관련보고	2
o 의사일정상정의건	24
2.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4
3.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4
4. 教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4
5.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이인영·홍미영·김영주·구논희·백원우·최순영·김덕규·지병문·복기왕·한명숙·원혜영·강창일·유기홍·이군현·김부겸 의원 발의)	24
o 의사일정상정의건	39
6.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단병호·현애자·이영순·심상정·노회찬·권영길·조승수·강기갑·천영세 의원 발의)	39
7.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복기왕 의원 발의)(복기왕 의원 외 150인 발의)	39
8.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단병호·현애자·이영순·심상정·노회찬·권영길·조승수·강기갑·천영세 의원 발의)	39
9.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조배숙 의원 발의)(조배숙 의원 외 150인 발의)	39
10.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단병호·현애자·이영순·심상정·노회찬·권영길·조승수·강기갑·천영세 의원 발의)	39
11.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지병문 의원 발의)(지병문 의원 외 150인 발의)	39

(10시54분 개의)

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국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수능시험부정행위관련보고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능시험부정행위관련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시행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진솔하고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고 국민들이 이런 부정행위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소신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병영 교육부총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수능시험 부정행위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2005학년도 선택형 수능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수능지원단을 구성·파견하고 부정행위방지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여러 시·도에서 수능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간략히 결론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입전형 차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일정대로 수능성적을 통지하고 2005년 1월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고 자료를 보아 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경과 및 현황 그리고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한 다음날인 11월 18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의해 휴대전화 이용 부정행위가 최초로 확인되었고 이후 부정행위 관련자의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에 저희 부는 광주시교육청 수능시험 관리체계 실태조사반을 파견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능시험 부정행위방지 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국회 교육위 보고, 당·정과의 간담회, 국무회의 보고를 드렸고 지난 11월 25일에는 시·도 교육감 회의를 개최해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어제인 12월 6일 경찰청으로부터 휴대전화 이용자 286명, 대리시험자 13명 등 부정행위 관련자 299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를 소집, 그 중 실제 수능시험 응시자 238명을 가려내고 226명을 무효 처리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아직도 수능 부정 의혹이 있는 1625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12월 14일 수능성적 통지 등 2005학년도 대입전형 일정은 차질 없이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부정행위 관련자 성적 처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까지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된 부정행위 관련자 중 성적 무효 대상자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수험생의 수능성적은 당초 예정대로 12월 14일 개별 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이후 통보자 중 부정행위자로 추가 확인되는 경우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무효로 처리되며 일반 수험생의 성적 점수와 등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12월 13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설정하여 무효 처리 대상자 중 부정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성적을 유효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수험생들의 성적과 등급 산정에 반영하지는 않겠습니다.

수능성적 통보 등 향후 대입전형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4일 성적표를 개인별로 배부합니다. 이어 15일부터 19일까지 수시 2학기 합격자를 통보하고 20일부터 21일간 수시 2학기 합격자 등록기간을 거쳐서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정시 모집 원서접수 기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의 추후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교육청 수능시험 관리체계 실태 조사는 2월 8일까지 계속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반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능부정행위 심사위원회 활동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거듭 송구한 말씀드리며 이를 계기로 우리 교육 공동체가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시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먼저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哲賢 委員 권철현 위원입니다.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터져 나왔고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악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옵으로써 국민들 상호간에도 충격이 크고 상처를 크게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교육부가 이 일에 대비하지 않았지 않느냐, 많은 암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각종 자료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해 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국민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총리로부터 듣기로는 사전에 경찰청이나 정보통신부에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이것을 막기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노력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權哲賢 委員 그런데 경찰청에도 어떤 협조를 구했는데 어떤 이유로 협조를 얻지 못했습니까? 한 번 더 들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대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시험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출제 등 시행기관입니다. 또 시·도교육청은 집행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웬만한 경우에는 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서 지침도 내려 보내고 대책도……

○權哲賢 委員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주어진 시간이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 어떤 협조를 요청했는데 왜 협조를 못했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자료를 보시면 초기부터 시·도교육청과 경찰청의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이 죽 나옵니다.

10월 29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절박한 심정으로 청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11월 11일 경찰청에 수능 문제지 관련 추적 조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험 이틀 전인 15일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능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인터넷 광고 차단을 청하고 수사 의뢰를 협조 요청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찰청도 나름대로 문제의 중요성을 유의하고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權哲賢 委員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 후의 발표에 의하면 경찰에서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물망을 쳐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렸다가 일망타진한 것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번 입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노력한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육부가 이 위험성을 경찰청에 누차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협조하지 않아서 사태가 터지면 강력하게 경찰을 규탄하는 교육부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교육부가 경찰에 몇 차례나 위험성을 느끼고 절박한 심정으로 막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교육부의 협조를 무시하고 해 버렸다, 이렇게 되어야 국민들이 ‘교육부는 할 만큼 했구나’ 이렇게 될 텐데 왜 그것을 하지 못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주에 실태조사반을 이미 파견했고 12월 8일, 내일까지 실태조사가 계속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 검토할 생각입니다.

○權哲賢 委員 벌써 경찰에서는 시험 전에 어떤 수험생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그 학생이 자기와 같이 모의했던 사람 명단까지 제출하고 다 잡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교육부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전에 부정이 있을 것을 탐지하고도, 교육부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다 잡아들이는 것이 이런 사태를 가져오게 한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단계에서 교육부가 경찰청에 강력한 항의를 했어야지 왜 그것을 못 하냐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 판단에는 경찰청이 함정수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상대가 교육계니까, 또 학생들이니까 교육적인 견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權哲賢 委員** 그런 부정행위를 사전에 막는 것이 교육적인 견지이지 알고도 사건이 터지도록 기다리고 교육부가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무슨 교육적 견지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말하고 있는 교육부가 ‘이럴 수 있는가’ 하고 분노해 주고 국민들한테 하소연해야 국민들이 ‘교육부는 제대로 철차를 끊고 제대로 노력했구나, 그런데 경찰청이 이렇게 했구나……’

교육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이 그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權哲賢 委員**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은 수능 부정 사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고 죄 지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을 변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얘기할 처지는 아닙니다.

○**權哲賢 委員** 이것은 경찰청에 대해서 항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의를 안 하실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것이 아니고 사건이 터진 후에 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權哲賢 委員** 협력 체계가 아니라 왜 사전에 알고도 예방하지 않았고 교육부의 요청을 묵살했는지 강력하게 교육부총리가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까지 항의 안 하실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확실한 실태조사가 내일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행동하겠습니다.

○**權哲賢 委員**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수능시험에서 클린 존이라고 불려왔던 부산에서도 수능 부정이 있었다고 크게 나버렸습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발표한 것입니까?

부산에서는 수능 부정 시험이 없었다고, 클린 존이라고 신문에 기사가 났었는데 그 다음날 부산에서도 수능 부정 시험이 있었다고 발표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강남 구정고등학교 학생인데 부산 출신이에요. 그것을 마치 부산에 수능 부정이 있는 것처럼 발표해 버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교육감한테 확인했더니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인데 부모들이 부산에 살고 있고 어머니가 개입되어 있다 보니 부산에서 마치 수능 부정이 터진 것처럼 기사화되어 버렸다고 하는데 차관,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權哲賢 委員** 어머니 주소하고 다 강남 구정고등학교로 옮겨 놓고 거기에서 돈을 얼마 주고 그러다가 잡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서울 구정고등학교인데 마치 부산에서 수능 부정이 터진 것처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터져 버렸어요. 위장전입이지요.

그러니까 시험을 친 장소인 고등학교가 소재한 곳에서의 부정을 따지는 것인데…… 교육부에서 이 이야기를 모르고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느 지역에서 나왔다 하는 부분은……

○**權哲賢 委員** 그 학생이 강남 구정고등학교 학생인데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수능시험이 본적지를 따집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경찰에서 그런 결과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權哲賢 委員** 하여간 경찰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수능시험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학시험을 대학별로 맡기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학이 대학입시 관리 능력이 없다고 교육부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교육부의 대학입시 관리 능력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사라져 버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학별로 입시를 관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를 상대로 무한경쟁을 해야 할 고등교육인데 천편일률적인 비슷한 시험을 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지적 경쟁력에 맞겠느냐는 말이에요.

대학의 특성화를 생각할 때도 이런 수능시험제도가 맞겠느냐, 이런 수능시험 부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대학별 입시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가 대학별 본고사를 반대하는 것은 비단 감독이나 관리 체계의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본고사를 보는 경우 고교 교육이 과행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을 더 강조해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權哲賢 委員 고교 교육의 과행화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일반적인 과목과 특수과목을 정해 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과행적 교육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따지지는 못하겠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학별 입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교육부는 반대하고 있네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지금 당장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權哲賢 委員 그러면 대학별 입시제도로 전환할 때의 문제점, 왜 교육부는 반대하는지 일일이 답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입학 전형제도는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고사는 어렵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학이 이미 자율권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權哲賢 委員 과거에 우리가 대학시험을 칠 때처럼 대학별로 입시를 관리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반대다 그거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權哲賢 委員 반대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내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열린우리당 익산을 조배숙 위원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유를 하자면 배를 전복시키는 것과 같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균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자료를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 11월 9일 이미 광주시 일대 수능 브로커 기사에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이미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으므로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십니다.

책임을 물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 경우는 엄밀하게 조사해서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경찰에서 휴대전화 수능 부정 응시자 244명을 포함해서 수능 부정 관련자 299명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226명에 대해서 1차 무효처리를 했는데, 경찰이 3개 이동통신사로부터 2만 703건의 숫자 플러스 문자 메시지, 그리고 숫자 메시지를 받아 가지고 전부 분석·분류해 가지고 1625명의 확인 대상자를 추가로 선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중 상당수가 수능 부정행위자로 밝혀질 경우 과문이 더 확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앞으로의 경찰 사건 추이를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로

부터 어떤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직은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오늘 자료에 보면 부정행위 관련자 중에 수능 비대상자가 있습니다. 비대상자 61명 중에 ‘휴대전화 이용’ 해 가지고 1·2학년 46명, 부정행위 도우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능시험을 볼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이 학생들도 해당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알기로는 이 학생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배숙 위원 어떻게 보면 수능행위 부정에 관련되었지만 그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도움만 주었기 때문에 수능은 볼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결과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휴대전화를 지참하였으나 송·수신 않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무효’로 해 놓았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올 3월부터 지침이나 요령에 휴대전화를 지참한 경우에는 송·수신을 안 하더라도 무효처리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공지해 왔습니다. 이것이 상응하게 조치한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적인 효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수능시험 관리에 관련해서 국민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제안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고3 수능시험 대상자인 학부모들로 하여금 관리 감독을 하게 하면, 결국 학부모도 자기 자식이 시험을 치기 때문에 경쟁자의 일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시험 감독에 참여하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지금 건의되고 제안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책반에서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일종의 명예 감독관으로 감독하는 경우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조배숙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고 또 견제장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서 사실 형사적으로 처벌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책임을 사회가 져야 되고 또 학생들은 일생 동안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처벌도 해야 되겠지만 향후 선도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 대책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지금 당장은 시험 부정 사건의 처리에 저희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도 어떤 의미에서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쓰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조사도 하시고, 최종적인 대책 안이 1월에 마련된다고 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조배숙 위원 그러면 그때 정말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개인의 삶은 경쟁입니다. 아일랜드가 1인당 GNP 1만 불에서 3만 불로 높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교육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틴 산업통상 및 고용촉진부장관이 말씀했습니다. 교육부장관도 아니고요.

최근 일본의 문부과학상도 교육 현장의 경쟁의식을 높여서 학생들의 학력을 세계 톱 수준으로 올려놓겠다, 이렇게 책상에 교육 개혁 메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볼 때, 평준화를 존중하고 경쟁을 배격하고 성적 부풀리기가盛行하고 전원 1등급을 내겠다고 학교마다 열을 올리고 이것이 오늘날 휴대폰 수능부정으로까지 치닫는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정말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이러한 때 수능 부정 사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인가, 물론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12월 7일 현재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

어서 교육부에 통보된…… 전국 299명이라고 했습니다. 날로 달라집니다. 경찰에서 오늘까지 추가로 수사 중인 부정행위 대상자는 1625명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자고 나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능 부정 가담자가 수십 명씩 늘어났다고 하고 또 적발자 중에는 특목고생도 있고 상위권의 의대생도 있고 학원 원장도 포함되어 있고, 정말 충격입니다. 교육 현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교육부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겁지겁 하느라고요.

학교 현장의,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은 교내 모의고사에서도 커닝하는 것을 당연히, 부끄러움도 모르고 더군다나 감독해야 할 교사들조차도 이것을 못 본 체하고 방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태가 수능 부풀리기, 전원 1등급과 연계된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지요. 성적만 우수하면 된다, 쟁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사고가 그야말로 교육 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현실에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장관께서는 오늘의 이러한 사태를 보고 어떻게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대단히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게 진퇴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김영숙 위원 책임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시냐고요. 책임을 무겁게 느끼신다고 했고요. 그러면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지금 현시점에서는 진지하게 이 문제 해결에 대응해서 크게 기여하는 쪽으로 제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김영숙 위원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볼 때 이러한 사태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책임진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배겨내시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님의

뜻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를 물러나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혹은 제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할 기회를 주세요.

○김영숙 위원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요. 나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아니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제 양식에 비춰서 지금 단계에서 그것이 꼭 사려 깊은 행동인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을 잘 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부정 적발 학생들 대부분이, 고교 중간·기말 시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능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졌다, 부정행위 연습을 기말고사에서 해 놓고 본고사에서 착착 진행이 됐다는 얘기지요.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보편적이라고 하는데 교육부는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런 현상이 만연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꽤 우려해왔습니다.

○김영숙 위원 경찰에 따르면 12월 6일 현재 수능 부정행위 수사 대상자 1625명을 추가 선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험생 전체의 얼굴 확인이 어려워서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얼굴을 어떻게 확인할 예정인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볼 때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쯤에 왔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숙의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철저하게 확인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 학생이 있으니까요. 교육부에서는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226명의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수능 표준점수 산출을 위한 통계 처리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1625명 중 부정행위 혐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수능 부정행위자의 점수

가 수능 표준점수 산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수험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양심적으로 그야말로 순수하게 시험을 본 선의의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일반 수험생들의 표준점수는 그대로 놔 둔 채 부정행위자의 점수만 무효 처리가 됩니다. 아실 줄 압니다. 이 경우에 부정행위자들이 아주 특정 과목에 집중되어 있거나 혹은 특정 점수대에 많이 몰려 있는 경우에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유·불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수가 사실상, 아시겠지만 57만 명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수험생의 불안 심리도 줄여 주고 국민의 불안도 줄여 주고, 문제 해결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국민의 불안도 씻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수능 부정 사건은 교육부의 안일한 대책 때문입니다. 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왜곡된 생각, 그야말로 팽배한 의식, 가치관의 결여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성적 지상 만능주의가 빚은 사건입니다. 점수만 올리고 보자, 내가 가진 능력은 없고 실력은 없지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점수는 올리자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정과 교사, 학교,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인지적 사고, 양심적 판단, 바른 가치관을 기르도록 하고 인성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것을 재무장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 현장에서 개인이 가져야 할 경쟁의식, 실력 향상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개인의 삶이 경쟁입니다. 삶이 경쟁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지요. 세계 속에 빼어 나가려면 하나하나 소중한 학생들을 존중해서 능력을 기르고 실력을 기르고 경쟁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대학 입시에서 그야말로 학교별, 아까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이 말씀드렸어요.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시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수능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학교마다 자기 아이들에 대한, 학생은 또 학교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교육부가 현재 소위 3불이라는 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고사는 당분간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3불 정책도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관님께서 너무 신주처럼 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경직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대다수 의견도 들어 보시고 이것이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인지, 대학 입시 제도에 필요한 것인지,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에 필요한 것인지,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이번 수능 부정 사건을 보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현상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향후 대책을 미시적 대책과 거시적 대책으로 나누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수능 부정의 3주체는 교육부, 경찰, 학생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부하고 경찰은 비록 가담을 하진 않았지만 관리 감독을 미진하게 해서 원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끔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점에서 경찰에 대한 문제는 행자위에서 다루어야 될 거고 우리가 여기서 터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부, 경찰, 학생인데 모든 문제는, 대책도 보게 되면 학생에 대한 처벌, 그리고 어떻게 수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중심이 모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일단 교육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교육부 책임자의 사과, 두 번째로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에 대한 문책 및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2월 8일까지 특별조사단이 광주에 파견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급적 징계, 문책에 대한 의지는 미리 밝히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터놓고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조사하는데 대단한 베테랑도 못 됩니다. 그래서 광주 내려가서 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고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어느 누구라도 책임지는 자세, 특히 도덕적 해이와 안전 불감증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책임지는 자세가 내부적으로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단기적 대책으로는 지난번에 전파탐지기 등등의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체계가 지방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교육청과 지방 경찰과 지방 검찰이 공동으로 지방별로 책임지는 관리 감독 체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 힘들다고 하면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반은 책임지고 지방의 경찰, 검찰, 지방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수능의 관리 감독으로 나오는, 내년에는 공조를 취하고 내후년부터는 지방 관리 감독 체계로 이전시키는 구체적인 책임을 나누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책임의 당사자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은 당장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60만 명의 학생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과부하가 걸린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지방 교육청으로 일정 정도의 권한

과 책임을 이양시키는 그래서 공동의 책임으로 갈 수 있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지방 차원에서, 집행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경찰청이 협력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고요.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현실적으로 그들이 이 문제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서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주체들을 많이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거시적 차원에서 1월에 대책이 발표될 텐데 종국적으로는 2008년도의 입시 제도가 별씨부터 학부모들하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4중고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수능, 내신, 논술, 면접 부분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수능 부분을 자격시험화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변별력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각 등급의 비율을 좀 늘린다든지 하는 구조적인 대책이 1월에는 같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제은행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좀 당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가능케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구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와의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자격시험화로 전환하는 문제, 문제은행으로 조속히 당기는 문제를 같이 대책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2006년도 입시는 그대로 시행되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교육 주체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학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 참에 본고사를 부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본고사 부활하게 되면 대한민국 교육은 붕괴됩니다, 사교육 시장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틈만 나면 연탄가스처럼 솟아오르는, 마치 준동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의지와 입장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간

략하게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2008학년도 이후 입시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하고 또 어두운 측면, 걱정스러운 측면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긍정적인 측면은 초·중등학교에서 독서하고 토론이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과 신뢰를 좀 깨우쳐 주는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수능 부정하고 연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 공동체, 특히 학생과 교사의 도덕적인 재무장 쪽으로 관심을 많이 두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그리고 어떠한 도전과 비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시점에서 3불 정책은 대단히 유효합니다. 마지막까지 정책을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럴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발전협의회를 곧 마련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 주체들이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창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달 위원 박창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수능시험 부정 사건을 처음 봤을 때는 광주시 지역만 국한된 줄 알고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박한 꿈은 하나의 물거품이 되고 작금의 교육 현장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20일이 지났습니다.

부총리께 물어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대학 들어가실 때 수능시험 쳤습니까, 본고사 쳤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닙니다. 저는 무시험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창달 위원 여기 있는 저희들은 그 당시에, 부총리께서는 머리가 좋으셔서 아마 특차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창달 위원 저희들은 다 본고사를 쳐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고교 교육 현장이 아주 엉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

금에 국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본고사를 치룬 우리들입니다.

현재 젊은 후배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러나 본고사가 부활된다고 해서 고교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께서도 물으셨는데 부총리께서는 계속 3불 정책을 굉장히 고집하고 계신데 과연 3불 정책을, 물론 거기에 맞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총리께서 3불 정책을 꼭 고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확실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 속에서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경쟁이나 수월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형평성이라든가 대중성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컨대 교육 평준화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내적으로 역동성 있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컨대 기여입학제도 좋은 방안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본고사와 연관해서도 옛날을 한번 돌아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살기도 어려웠는데 그때 본고사를 실시했을 때도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야기되었고 또 사교육비가 대단히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돌아갔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드리고 싶습니다.

○박창달 위원 그런데 사교육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교육비 균절은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교육비를 균절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억지로 사교육비 균절을 앞세워서 3불 정책을 고집하면 안 되고 어차피 사교육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벌써 유치원에 입학하면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과출부를 하더라도, 꼭 입시가 아닌 어떤 특기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사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사교육비가 커지는데 그것을 너무 신경쓰다 보면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작년 6월인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차관이 위원장이 되어서 사교육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하고,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유아 무야되어 버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차관이 계시는데 그것도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바가 꽤 있습니다. 위낙 학부모님이라든가 학생들의 교육열이 대단히 치열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없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것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 EBS 수능이라든가 e-러닝 같은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 성과가 꽤 있습니다. 이런 점도 봐 주십시오.

○박창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경찰청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청은 어디까지나 주체가 아닙니다. 정보통신이나 경찰청은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능시험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제공은 교육부입니다. 모든 책임은 교육부가 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수능시험이 아니라 대학별 선발고사를 쳤을 때 한 대학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분명히 학장, 총장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은 본고사를 시행한 그 대학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주체가 바로 국가입니다. 교육부입니다. 저는 부총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약 20일이 지나도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부총리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총리께서 사퇴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서 새로운 마인드에서 대책을 다시 수립하고 수습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추호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저에게 계속 묻습니다. ‘지금 이 단계가 너 있을 단계냐, 혹은 조금 더 노력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현재 제 대답이 두 번째 쪽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 문제 해결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박창달 위원 지금 교육 관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을 다 숙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 전체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어느 누군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 시점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열린우리당 유기홍 위원입니다.

먼저 부총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대개 광주교육청 관할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경찰의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대리시험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지금 16개 시·도 중 총 10개 시·도에서 적발이 됐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유기홍 위원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라면 사실은 반 이상의 시·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데, 지금 예상으로는 문자와 숫자가 합해져 있는 메시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다른 시·도까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기홍 위원 어쨌든 이것은 미봉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1, 2점의 점수에 의해서 학생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변별력이라는 신화 뒤에서 1, 2점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현재 입시제도의 문제점이 이번 수능 부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점에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동의

합니다.

○유기홍 위원 2008년 입시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하자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작은 목소리였던 데 비해서 이번 수능 부정 사태를 거치면서 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에 대한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 문제를 조금 더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직 자격고사화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정책토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자격고사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사실은 대책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파차단기 차원의 대책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달래질 수 없고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능시험의 자격고사화 문제를 포함해서 수능시험의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이종갑 국장님한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부총리님께 질의드렸던 문제인데 9월 14일부터 수능시험 전날인 11월 16일까지 다섯 차례 이상의 사전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에는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과 사용될 휴대전화 번호까지 제보가 있었습니다.

감독관에게 부정행위 가능성을 고지하고 관리 철저를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교육부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지금 광주광역시교육청 수능시험 관리체계 실태 조사의 반장을 맡고 계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관리국장 이종갑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리고 11월 24일부터 12월 8일 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을 때 충분히 고

지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불이 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에다 불조심 표어를 한 장 붙여 놓았다고 해서 불조심해야 된다는 사전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조심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합선이나 누전될 가능성은 없는지, 소화기는 제대로 작동되는지, 소화전에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을 하는 것과 불조심 표어를 그냥 붙여 놓은 것은 정말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어떠십니까?

지금 현지에 내려가서 조사를 해 보신 상태인데 광주교육청 홈페이지에 바로 전날까지 제보가 있었는데 광주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관리국장 이종갑 그 부분도 실태조사의 중요 항목 중의 하나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런데 내일이면 조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동안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관리국장 이종갑 사후적으로 보면 그런 우려되는 소리들이 올라왔을 때 교육청 직원들이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일부 학교 이름이 거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경위에 의해서 삭제했는가를 지금 계통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러니까 삭제했다는 데에서 나타나듯이 이 제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삭제할 정도의 인식이라면 전혀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관리국장 이종갑 외형적으로는 그 인포메이션에 기초해서 일단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각 학교들은 주의하시오, 그런 조치는 취했던 것 같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리고 시험감독 선생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 고지가 있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관리국장 이종갑 전국 시·도교육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감독 선생님들한테 계통적으로 지시는 다 내려가 있었습니다.

○유기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불조심 표어를 붙여 놓는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소화기도 꼼꼼하게 점검하는 수준이었는지, 제가 아까 예를 들었

습니다마는 사실은 시험감독 선생님들한테 누구나 다 사전에 고지하는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관리국장 이종갑**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부정행위방지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별도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고사장에 들어가는 모든 감독 교사들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부정과 관련된 유의사항까지도 전달은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 위원** 사건이 나고 나서도, 이것은 광주교육청만이 아니라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문자메시지 수사가 있기 전에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어찌 보면 그 정도 선에서 봉합하려고 급급했었던 것은 아닌가요? 국민들은 그런 느낌들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광주교육청에서는 어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관리국장 이종갑** 사건이 일어나고 제일 처음 11월 18일에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실무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유기홍 위원** 예, 나머지는 부총리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가 학생들만 처벌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고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이종갑 국장이 말씀하신 선에서만 보더라도 그러한 제보를 삭제할 정도로 무신경과 무대책, 지금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계에 안주해서는 이 문제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계에 안주할 그런 뜻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주도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꼭 묻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기만 하겠습니다.

전파차단기나 금속탐지기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적발 문제보다도

예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책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예방이 가능할 수 있는 대책을 조만간 제출해서 국회에서도 같이 토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최순영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해도 교육부에서 이번에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수사와 처벌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안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삼풍 사건이나 모든 사건들을 보면 사건이 났을 때마다 장관이 사표 쓰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처리가 되어 왔는데 저는 그것만은 아니다, 어쨌든 간에 근본 문제를 보고 철저하게 해결하는 데 우선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거취를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일단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소 잊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능 부풀리기나 각급 일선 학교에서 왜 이렇게 점수를 올리려고 하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너무 경쟁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벌 경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학벌 경쟁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한사람 한사람이 사회에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학생은 필요 없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을 나와야만 되는 학벌 경쟁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벌 경쟁이 아닌 학습 경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두 본고사가 부활되어

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능을 보고 나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소식을 안 들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살하는 학생은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것도 사회의 피해라고 봅니다. 학생들을 그렇게 몰고 가는 부분, 본고사가 부활됐을 때 그런 학생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 그때 가서는 또 뭘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2008년도 입시 개혁을 제대로 토론해서 내놓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1, 2학년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TV를 보았을 때 무감독시험을 하는 학교도 사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이 잘못된 것인지, 사회의 모든 근본문제…… 저는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몰고 갔던 것에 책임을 지고 이런 아이들에게 오히려 가치의 재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거기에 상응하는 벌은 주어야 되겠지만 형사처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가, 전과자로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재교육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님께서 학벌경쟁에서 학습경쟁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는 백번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교육의 책임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학벌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학부모님도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 안에서 교육주체들이 이것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무감독시험을 말씀하셨는데 전국에서 지금 10여 개 학교가 무감독시험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빛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하는 풍토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여기에서도 1, 2학년 학생들이 도우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한 학생들의 경우는 재교육이랄까 교육적인 방도를 통해서 거듭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논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최순영 위원 어쨌든 간에 일단 사회 인식이 변화해야 되는데 학벌 위주로 가는 부분과 맞물리기는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되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옳은 말씀입니다.

○최순영 위원 사실 이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아이를 어떻게 하든 좋은 대학에 보내야 하는 욕심, 교육열…… 저는 이것도 하나의 잘못된 교육열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번에 철저한 교육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12월 10일에 대전에서 교육혁신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에서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신입사원 충원과정에서의 노력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한 한국의 대기업체가 이런 운동에 함께 나서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학을 안 가도 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업고등학교 활성화에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내년 초에 실업교육 경쟁력 강화방안이라고 하는 직업교육 체계를 완전히 변경하는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위원 저도 이번의 수능사태를 전화위

복의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능문제는 기본적으로 부정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학습윤리를 강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고요.

여기에 학벌주의를 끌어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 있는 문제고요. 바로 이것을 계기로 학생들이 지식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습득하는 태도, 윤리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교육부가 나서서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의 수능부정은 빙산의 일각이고, 기 말고사라든지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많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도 각종 표절이라든지 학습윤리와 어긋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제까지는 사실 눈을 감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윤리를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가장 먼저 소리 높여서 이야기해야 되고 국민적인 캠페인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왜 교육부가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 수능부정 사건을 계기로 지금 말씀하신 쪽에 대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12월 10일 교육혁신포럼에서도 교육공동체의 여러 당사자들이 자정하는 모습을 보일 생각이고요. 교육발전협의회가 아마 12월 중순경에는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교육공동체의 많은 당사자들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성하고 도덕적으로 재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교실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제 생각에는 장관께서도 이번 기회에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다든지, 국민적인 캠페인을 교육부 차원에서 한번 전개해 보신다든지, 교육청을 그런 방향으로 독려하신다든지, 좀더 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두 번째 대책은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입시제도 문제입니다.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입시제도를 상당히 고민 하셔서 발표하셨는데, 그 입시제도가 수능에 있어서는 9등급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킨 것에 비해 사실 얼마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앞의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계에서도 많이 지적되는 문제인데 수능을 이원화하는 문제가 해결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공통기본과정이 고1에서 끝나니까 고1 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자격고사 형식으로 치르고요. 고2, 3은 선택하는 과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선택과목별로 수시로 시험을 치르고요. 그렇게 하면 변별력에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시험을 칠 수 있게 되니까 하나의 시험에 인생이 다 걸리는 문제는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2008학년도 입시제도 개선 방안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주력을 했습니다. 2008학년도 이후 몇 년 동안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는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이번 수능과 연계해서 이제부터 다시 철저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런데 2008학년도 안이라는 것은 결국 같은 문제 인식에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나치게 수능에 매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9등급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원화되게 한다는 지적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는 발표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미루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2008년도 대학 입시를 다시 바꾸기는 힘드시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2009년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세 번째는 관리 감독체계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로 제기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사 분들이 감독을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하고 효과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사 분들은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지 시험 감독을 해서 아이들을 적발하는 데는 익숙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를 보면 감독 수당이 9만 원인가 그렇지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이주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공받고 하루는 지침을 학습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감독을하게 되니까 이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 분들한테 사실 지나친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교사 분들이 감독하는 체제가……

그리고 교사 분들한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것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감독계약을 받고 하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서약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사실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당장 해답이 딱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꽤 고민스러운데요.

그래도 학교 선생님 이상 감독하는 데 적당한 분이 또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최근에 굉장히 온정주의로 흐르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다른 어떤 교육주체 혹은 감독 전문가가 있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단 교사를 감독관에서 배제하고 생각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이주호 위원**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교사들이 감독에 부적격하다는 것은 아니고, 원하시는 교사 분들은 참여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분들이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애착을 가지시는 교사 분들도 감독관으로 들어가고, 또 그

와 관계없이 중립적인 감독관들도 배치되는 것이 효율적인 감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궁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리고 사실 외국기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사후적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잘 모릅니다.

○**이주호 위원** TOEIC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 친 결과를 죽 분석하다 보면 여러 번 시험을 친 학생이 있을 경우 그 학생이 두 번의 성적은 아주 나빴는데 한 번은 이상하게 굉장히 높다든지, 다른 시험에서의 결과는 아주 나빴는데 TOEIC만 아주 좋았다든지 이렇게 시험결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해서 부정행위를 유추해 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 생각에는 SAT도 그렇고 시험 횟수가 많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능의 경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주호 위원**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겠지요.

만약 수시로 응시하는 체제를 갖춘다면 그것은 검토해 보실 수 있으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그렇습니다.

○**이주호 위원** 몇 가지 질의가 더 있는데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지난번 간담회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되도록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당장의 대책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명백하게 부정행위가 있다면 있는 그대로를 다 밝혀내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게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2005년 입시전형과 관련해서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는 대책이 있어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숫자 중심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밝혀졌고, 숫자 플러스 글자의 문자 메시지로 조합된 부분들이 추가로 수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상을 해 보니까 거기까지 해 본 뒤에 암호화해서 처리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그런 것까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확인해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차원에서 명백하게 발본색원해 내는 의미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부에서는 표본점수 산출이라든가에 있어서 이미 나타난 문제들, 또 확인되지 않은 문제들이 규명될 때까지 보류를 했다가 입시전형 진행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12월 14일 수능시험 성적이 발표되기 위해서는 6일 이후로 미룰 수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10일까지 통계처리 및 검증과정이고, 11일부터 12일까지 성적표 출력 및 포장이 되어서 13일에 성적표가 시·도에 배분되고, 14일에 발표가 되지 않으면 모든 입시전형 과정에 차질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포된 그다음 날인 15일부터 19일까지 수시2학기모집 합격자가 통보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시모집의 합격을 수능시험의 일정한 등급을 얻는 것과 연계시킨 경우에는 적어도 14일까지 발표되지 않으면 전부 차질이 생깁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입시전형이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보다도 또 다른 과학성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에 있었던 수능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정행위들이 전체적인 성적산출 과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 일정을 진행해야 된다는 측면으로만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지는 않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래서 그 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이 먼저 이야기되어야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일정의 진행에 대해서 동의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옳습니다.

표준점수와 등급백분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12월 7일 이후에 부정행위자가 발견되더라도 그 수가 일정한 수, 예컨대 몇백 명이 되더라도 사실상 모수 57만 명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적고 모든 일정이나 과정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전혀 아닙니다.

○이인영 위원 저도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두 번째, 저는 차제에 입시부정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평가행위와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행위—특히 내신 부풀리기 얘기도 나왔으니까 내신성적비중이 강화되어 나가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들에 대한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세우고 상시적인 관리·감독 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측면들로 가는 것이 뼈질식 해법보다는 구조적인 해법을 찾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측면에서 한번 대안을 만들어서 해 보시면 어떤가?

그리고 적어도 저는 이것이 교육계 내에서 내년 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겨울방학 이내에 잘 만들어서 내년 봄부터는 일괄적으로 모든 일선 현장에서 다 적용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점, 명백한 부정이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 들춰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아까 제가 규명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다고 한 것은 하나의 단면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추호도 있는 것을 덮는다든가 출인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번에 아예 다 들춰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가체계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방지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이 정책 토론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도 저희들이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쨌든 시험과정에서 휴대폰을 통한 잘못된 행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있어 왔다고 그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 느끼고 이번 수능과정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임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계 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교육 윤리적인 어떤 재무장이라고나 할까 이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벌이고, 또 사회 지도층들이 앞장서서 호소하는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2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우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이군현입니다.

그동안 학생 사회에서는 이번에 일어난 부정행위가 공공연히 성행해 왔고, 또 이번 부정행위가 일어나리라는 징후를 광주를 비롯한 전국 여러 교육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글쎄, 예측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군현 위원** 예측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모르셨다면 여기 6페이지에 조치를 취한 것들이, 예측을 못 했는데 취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니요,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저희가 굉장히 심하게 우려를 했습니다.

○**이군현 위원** 우려를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징후를 간파하고 예측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이 우려했습니다.

○**이군현 위원** 우려했다는 게 예측을, 징후가 나타나서 이것이 시험 부정으로 가겠다는 것을 간파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높은 가능성을 저희들이 인지했습니다마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확신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군현 위원**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청에다가 조치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깊은 우려 속에서 그런 조치를 청했습니다.

○**이군현 위원** 예측을 못 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요.

이런 징후가 나타나서 경찰청에 관계기관 협조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볼 적에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징후를 인지했으면 학부모, 교원, 16개 시·도 교육청 책임자들한테 구체적인 제재조치와 행정조치, 기술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 질 사람은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잠깐만요.

저도 처음에 16개 시·도 교육청 중 한 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이게 부분적으로 아주 숫자가 적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에 확산되고, 또 교육청에서 취한 행위를 보면 전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거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또는 행정적인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지요. 죄 없는 애들만 처벌한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것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말

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군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까지 예시하고 고교에 부정행위 방지대책 수립, 홈페이지 팝업 창 게재 요청 등 아주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데까지 지시하고 지침을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면 우려를 한 게 아니지요. 정확하게 사태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글쎄,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군현 위원 말씀을 그렇게 안 하는 것이지 그게 왜 어려워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우려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미리 예방적인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장관님, 조치를 취했는데 교원들, 그다음에 교육감들한테 딱딱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지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예방적인 조치를 불충분하게 취함으로 해서 사태가 이렇게 커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니, 제 말씀 조금만 들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수험생, 감독관에게 유의사항 책자, 동영상까지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 과정을 저희들이 점검했습니다. 노력을 꽤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기술적인 데까지 신경을 못 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군현 위원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지요. 애들이 기계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해서 시·도 교육청에다가 협조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을 정후가 보이니 애들이 시험장에 일체 핸드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물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보통신 기술과의 하나의 싸움이기도 한 그런 면을 생각하셔야지요.

○이군현 위원 정보통신이 아니지요. 이것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구체적인 조치인 것 같아요. 기계 속에 있는 정보통신 기술과의 싸움이 아니지요.

그것을 못 갖고 들어가게 확실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것이 불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교육부에서 충분히 못 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사태가 심각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교육부에 관계되는 몇 분들한테도 문제만 터지면 교육부장관 같라고 하면 누가 교육부장관 해 먹겠느냐고 저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태를 죽 보니까 교육부에서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일을 키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선의의 학생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애들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지도하는 것이고, 또 애들은 그런 유혹이 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고, 또 빠졌을 때 어른하고 다르게 그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도되어야 하는 것이 학생 아닙니까? 아직 배우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선의의 학생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학생에 대한 처리 문제도 세심한 교육적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일생을 망쳐 버리게 하는 어떤 조치가 아이들에게 내려지지 않도록 세심한 교육적 배려를 해 달라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주문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수능의 성격을 포함해서 입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대학에 입시자율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수능의 성격부터, 입시정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안을 저희 한나라당 위원들, 또 다른 당의 위원님들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위원 진수희 위원입니다.

수능이 지난 11월 17일에 치러졌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진수희 위원 오늘이 12월 7일이니까 한 20일 가까이 흘렀는데 저는 정말 학부모 입장에서 지난 20일 동안 답답하고 때로는 분노했다가 또 너무나 한심했다가 이제는 뭐 거의 포기상태에 이른 심정인데요.

11월 17일 수능 휴대전화 부정사건 터지고 지난 20일 동안 거의 매일 같이 어느 한 지역인가 했더니 자고 나면 또 다른 지역……

오늘 석간 보도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부분 까지 포함하면, 아까 오전 답변에서는 전국 10개 지역이라고 대답하셨는데 13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6개 시·도 중에 13개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 있고, 하루 지날 때마다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성적산출기준일로 잡은 6일에도 심지어 경찰청에서 수사대상자 1625명을 추가로 선별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시험 수사와 관련해서 교육부 쪽에 수험생과 응시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교육부가 받아들일 경우 수능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 58만여 명이 대리시험을 쳤는지를 조사받게 되는데 경찰청의 이 요구를 교육부에서 받아들일 겁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대입전형은 스케줄대로 진행을 시키신다면서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런데 사진과 대조해서 엄청난 수의 수능 부정 학생이 적발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희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교육부의 희망사항이고요.

제가 분노하는 부분은 어떻게 고구마 줄기 캐듯이 계속 되는데 애초부터 한점 의혹을 남기지 않겠다는, 어차피 성적산출 기준일, 대입전형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차질이 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처음부터 의혹이 있는 모든 케이스는 다 조사를 하셨어야지 처음

에는 숫자 이상한 것만 체크한다고 그랬다가 문자에 관해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것은 일단 덮어두었다고 그랬다가 며칠 있다가 문자까지 포함해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님, 그것은 경찰이 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대상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진수희 위원 그렇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까 경찰하고 교육부가 사건 전에는 모르지만 사건 이후에 협조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찰이 하는 일이라 교육부는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수사상의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일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일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수희 위원 저는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 교육부에서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성적산출 기준일을 6일로 잡고, 그다음에 어차피 모수가 너무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량한 많은 수험생들이 과연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부에서 별도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군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심각히 우려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각히 우려를 하셨으면 제 생각에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마치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바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반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올해 수능을 치른 많은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기준에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불신, 아니 불신의 정도를 더 넘어서 어떤 냉소적인 태도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수능 부정에 관련된 행위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학생들이 비록 청소년들이기는 하지만 엄정하고 단호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학생들에게만 책임이 있는가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여기 계시는 교육부장관 이하 관계자들 모두, 물론 우리 교육 위원을 포함한 어른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선은 1차적으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당국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수능 부정 파문의 크기가,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진수희 위원 대단히 심각하면 책임을 어느 선까지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오전 중에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수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어느 선까지 교육부에서는 책임지시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1차적으로 수습하시고, 수습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우선 현 단계에서 문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진수희 위원 수습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내고, 더 이상 문제 제기가 없고 그냥 또 가라앉으면 대충 넘어가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현재 파장을 잘 마무리하면서 종합 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수희 위원 지금 교육부 쪽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인지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런데 아무도 지금 자리를 내놓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 문제

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동안 교육부장관께서 퇴진하게 된 여러 사건들이 죽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들의 크기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그렇게 견주어서 하나하나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진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논회 위원 질의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짧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너무 떠벌리고 있지 않나, 또 언론은 이벤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치권은 정책 공방의 한 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어떤 대안들을 찾고 이번 사건을 어떻게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을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보다도 이 현상을 어떻게 더 떠벌려 내놓을 것인가에 더 몰두하지 않나 하는 반성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에 있다고 하면 조선시대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또는 선진국이 됐든 후진국이 됐든 부정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제도화되고 지능화됐기 때문에 사회 문제화되는 것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용서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인 책임이 우리 어른들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가는 반성을 깊이하고 교육부장관이나 정치권에서 사법부 쪽에 지금 저질려진 우리 아이들의 죄를 좀 깊이 반성시키면서 아울러 가볍게 처리해 주셨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도 두 가지 생각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사건이 사실상 파장이 클 뿐더러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다뤄야 되겠

다는 하나의 입장하고, 또 하나는 아직 미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심사위원회, 기타 대책위원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보다 고뇌하면서 적절한 선에서 균형을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논회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하셨는데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현상들, 다시 말해서 출세지상주의라든지 학벌지상주의라든지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계량화시켜서 평가하는 모습들도 완화시켜야 되는 대안도 필요하겠고, 교육을 통한 민주 시민교육, 또 한 가지는 제도와 정책적 보완,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대안들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부정행위의 희생자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런 노력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위원장님께 좀 질의를, 제 질의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수능 부정행위 보고를 받고 질의가 네 분 위원이 남아 있었는데 12시 20분쯤 갑자기 정회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 반에 다시 속개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2시 반은 그만두고 6시간이 훨씬 지난 8시가 훨씬 넘어서야 속개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양당 간사 간의, 위원장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일정을 다 짜 놓았고 정해 놓은 상태인데 이를 진행하지 않은 위원장님은 회의 진행을 기피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 의도적으로 지연을 했다든지 기피하셨다면 국민들과 위원들께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우여**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것이지요?

○**구논회 위원** 제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생각해서, 위원장으로서 속개가 지연된 것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시 반에 속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법사위원회를 위호한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양 교섭단체 중에 한 교섭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앞으로 상정될 법안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자 원했습니다.

지금은 양 교섭단체 간사 간 원만한 협의를 마치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다시 양 교섭단체의 참석하에 속개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본 위원장으로서 안도의 생각을 하는 동시에 또한 그동안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대표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원만하고 또 그야말로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점으로 양해해 주시고, 이제 위원님들의 주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구논회 위원** 아니요, 제가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양당 간사 간 합의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합리적으로……

○**이주호 위원** 질의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까?

○**구논회 위원** 제 질의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주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우여** 그만 진정하시고,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장관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고, 위원장에 대한 의사진행의 문제는 의사진행발언권을 받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논회 위원**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구논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논회 위원** 오늘 회의를 의사일정에 맞추어서 상정된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세심한 배려와 또 아울러 오전에 보였던 또는 오후에 보였던 지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의를 진행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주호 위원 저는 장관께서 두 번째로 교육부장관직을 맡으셨을 때 누구보다도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간사로서,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혼란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수능 부정 사태는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일어났고 갈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 교육계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풍토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께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또 교육부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책무성을 가지지 못하고 교육청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교사가 학생들에 대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결국 우리 교육이 붕괴되고 또 우리 교육 문제가 계속 사회 갈등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능 부정 사태는 사실 불가피한, 그러니까 장관께서 최대한 노력하셨다고 얘기할 측면이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단 예견이 됐던 일들이 고 또 예견이 된 만큼 충분히 조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장관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를 왜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느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퇴진을 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뜻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은 그 시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수능 부정 문제가 점점 크게 비화되고 있고 제가 오전 중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봤는데 장관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크게 답변을 못 하

고 계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이주호 위원 제가 충분히 오전에 기회를 드렸었는데요. 장관께서 계속 책임을 미루려고 하지 마시고 용단을 내리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답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위원 많은 국민들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답변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마디로 답변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호 위원님!

저도 인격적인, 제 입장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추호도 책임을 회피할 뜻은 없다……

○이주호 위원 제가 장관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고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원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우 위원 오전부터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 관련해서 무슨 건설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전부터 똑같이 계속해서 장관 퇴진이라는 정치 공세만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정책 질의입니까? 이것은 시간 끌기밖에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5분씩 계속해서 전체적인 의사일정만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건설적 대안이 하나라도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장관 퇴진이라는 정치 공세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하셔서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타 위원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영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 가지고 시간 끌기 작전을 편다는데 오전에 저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보는 과목당 얼마, 선수가 있고 도우미가 있고 중계자가 있고 또 선후배 간의 대물림도 있고 그다음 작년에 커닝 100 점 올린 대리시험자는 500만 원 받는다고 하고…… 이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더군다나 상황이 아이들입니다. 시간을 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오늘 수능에 대해서 의안 가지고 질의하는 날이지요.

○**구논희 위원** 그렇게 중요한데 왜 이제 온 거예요. 8시간 미루다가 이제 왔냐고요!

○**김영숙 위원** 직접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입니다. 당당히 한 것에 대해서, 진행을 잘 해 주셔야지요.

○**구논희 위원** 6시간 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김영숙 위원** 왜 흥분하시면서 손짓을 하고 그래요. 한나라당이 중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냥 있는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논의하고 왔어요.

○**위원장 황우여** 좀 시간이 지연되고, 또 양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럴수록 서로 존경하시면서 계속 진지하게 국사를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이 좀더 양심 교육에 치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 내용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는가, 또 한편으로 어린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좋은 전환점으로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부장관께서는 잘 선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엄정한 조사와 기성세대의 책임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상정의건

(20시57분)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법률안들은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부수 법안이 아니므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에 대한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보완입법을 하기 위한 법률안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4. 教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5.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이인영·홍미영·김영주·구논희·백원우·최순영·김덕규·지병문·복기왕·한명숙·원혜영·강창일·유기홍·이군현·김부겸 의원 발의)

(20시59분)

○**위원장 황우여** 의사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안병영 교육부총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이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사전·사후의 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재임용 관련 구제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용기간의 만료 사실을 통지받은 교원으로부터 재임용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학문 연구 실적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둘째,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하며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공립 대학에 근무하는 계약제 임용 교원에 대하여도 재임용 관련 구제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의 추천으로 교육대학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 졸업 후 당해 지역의 교사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과 마찬가지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재임용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하며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교육감은 교육감의 추천으로 당해 지역의 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졸업 후 4년 동안 당해 지역의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고 교사 임용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며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반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 특별법에서 재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재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3개 법안에 대하여 정부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이인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 위한특별법안을 정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회의 시간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없어서 제가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저는 이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성호 의원을 대신해서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975년에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2003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까지 재임용에서 위법·부당하게 탈락된 국·공립·사립 대학교원은 무려 4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임용 탈락 교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상태로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취지를 존중하여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 결정이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임용 탈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법에서는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업무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 학문연구와 같은 객관적인 사유를 기준으로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 대하여 특별 재심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임용 탈락 후 정년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탈락자 또는 상속인에게 재심청구를 인정함으로써 명예 회복과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0일 이내에 심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탈락 교원은 즉시 복직하고, 재임용 탈락 시부터 계속하여 재임한 것으로 보며 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 주체가 변경된 경우 재임 결정의 효력은 포괄승계한 임용 주체를 기속하도록 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방치되어 더 이상 재임용 탈락된 대학교원의 기본권 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재임용 탈락 교수 구제를 위한 동 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천병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이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께 따라서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임용의 연혁입니다.

사립대학 교원의 기간제 임용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75년 7월 23일 법률 제2775호로 공포·시행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로부터입니다.

2쪽과 3쪽은 교원기간제 임용의 연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 보면, 1975년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기간제 임용이 도입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재임용 탈락자에 대한 사전·사후 구제절차와 수단, 재임용 탈락의 기준이나 요건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된 바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간제 임용 및 재임용에 대한 종전의 판례입니다.

기간제 임용 및 재임용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판례가 모두 위헌 결정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임용 및 재임용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의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2월 27일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나, 동 조항을 단순 위헌선언하는 경우 기간임용제 자체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즉,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재임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재임용 거부를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이 갖는 중요한 기능과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요청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1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02헌바26 헌법소원심판에서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2003년 12월 18일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은 헌법 제31조제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은 2000헌바26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조항과 연혁만 다를 뿐 기간임용제의 본질은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임기만료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벼금가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에 대하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사유, 나아가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동 조항은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검토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제53조의2제4항 내지 제8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즉,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며,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되, 재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임용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재임용 거부를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하되, 심의과정에서 당해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재임용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불합치 결정의 이유로 들었던 첫 번째,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인 기준 미비, 두 번째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미비, 세 번째 재임용 거부를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 미비, 네 번째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하여 다투 수 있는 제도

적 장치 미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53조의2제7항의 경우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에 대한 절차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재심의를 요청하는 모든 교원 즉,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 모두에 대한 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사립대학 입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53조의2제7항에서 재임용 심의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법 제15조의 규정을 원용하여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인 사유로써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객관적인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개정안의 시행일과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안 부칙 제1항과 안 부칙 제2항에서는 동법은 이 법의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대학교육기관 교원까지 적용하고 있어 동 법안에 의해서는 장래효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법안에서 장래효만을 인정한 사유는 1975년 재임용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 법안의 시행일 전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 법안의 제출에 앞서 이인영 의원님의 의원입법으로 발의·제안된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이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 구제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대하여 다투 수 있는 사후 구제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고, 교육감 추천으로 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일정기간 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약제 임용 대학교원의 재임용 절차 신설입니다.

안 제11조의3제2항 내지 제6항에서는 국·공립 대학 교원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 심의와 관련한 사전적 절차와 사후적 구제수단 및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인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재판소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국·공립 대학 교원에 대한 계약제 임용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도 사립학교법과 마찬가지로 재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법안 중 계약제 임용에 관한 제11조의3제2항 내지 제6항은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제53조의2제4항 내지 제8항과 그 내용이 동일한 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감 추천 교대 편·입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32조의2에서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지역별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의 추천을 통하여 교육대학에 편·입학한 학생들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들에 대하여 졸업 후 4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하도록 한 후, 합격한 경우 장학금 수혜기간의 2배 이내의 기간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강원도교육청 등 4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 지역 교육대학 입학생 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제도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및 5개 광역시를 제외한 경기도 등 도 지역 초등교원 공개전형 시험의 모집인원 대비 응시인원을 살펴보면, 그 경쟁률이 최저 0.30에서 최대 1.09로서 대부분의 도 지역에서 미달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교원 신규 임용자의 해당 지역근무를 확대할 수 있는 교대생 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제도의 도입은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있어서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를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일용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항이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과 그에 따른 장학금 지급, 그리고 장학금 수혜학생에 대한 해당 지역에서의 의무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32조의2의 제명인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교장의 임기 및 정년 규정 보완입니다.

안 제29조의2에서는 교장의 임기가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동안 교장의 임기가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하고 있던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마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도록 2004년 2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각 학교의 1학기 말일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교장의 임기가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바, 이를 통일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7조도 같은 취지에서 교장의 정년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안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대상인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이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벼금가는 효과를 가지므로 재심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에서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께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재임용 관련 규정과 사후적 구제조치로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완하는 동시에 동 법안에서도 역시 2개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불리한 처분”에 재임용 거부처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배숙 위원 전문위원님, 다음은 그전의 판례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하세요.

○진수희 위원 아니, 저희가 이것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야 돼요.

○전문위원 천병호 다음의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종전의 판례에서는 헌법위헌을 내리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하나 살았고요, 그다음에서 서울행정법원 판례의 경우는 헌법 불합치의 경우로 2개의 상반된 판례를 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헌법 불합치 결정의 내용입니다.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현바26 헌법소원심판에서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2003년 12월 18일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은 헌법 제31조제6항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임기만료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벼금가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사유, 나아가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동 조항은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과 안 제9조제1항에서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및 동 법안에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임용 거부처분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에 준하는 불리한 처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해 재심을 담당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그 명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 위한특별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면서, 과거 재임용에서 거부되었던 교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1975년 대학교원에 대한 기간제임용이 도입된 이후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거부되었던 교원에 대하여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급입법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 법안은 1975년 7월 23일부터 재임용이 거부된 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이 소급입법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위헌 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판시되었을 경우 형벌규정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는 장래효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법제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은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그 밖의 기득권자

의 이익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보다도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헌이 되나,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 보호보다도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동 법안이 대학교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은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그 밖의 기득권자의 이익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한에 있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 이전에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들에 대하여 적용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9조에서는 재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탈락 교원은 즉시 복직하고 재임용 탈락 시부터 계속하여 재임한 것으로 보며, 재임용 탈락 당시의 임용주체가 변경된 경우 재심결정의 효력은 포괄승계한 임용주체를 기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임용 탈락 교원이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재심특별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탈락한 때부터 결정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지급청구권 및 복직의 권리 등을 갖게 되고, 당해 탈락 교원이 정년이 초과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청구권을 갖게 되어 임용주체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실정법에 따라 부당은 있었더라도 적법하게 시행한 재임용 거부로 인하여 큰 경제적 부담과 교원 충원이라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소급입법에 의하여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그 밖의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지는 경우에 해

당하는 것으로 소급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법무부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동 조항에 대하여 사립대학의 경우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 오로지 부당만이 문제될 수 있는 재임용 탈락 사안에서 소급효를 인정하여 일률적으로 학교법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 제13조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더욱이 재임용 탈락에 관여하지 아니한 임용주체의 포괄승계인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위헌의 소지가 놓후하다는 의견을 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교원 재임용 탈락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부 439명이 되겠습니다.

결국 소급입법 금지 원칙의 한계를 준수하고 부당하게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들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명예 회복과 국가 차원의 적절한 보상 수단 마련과 사립대학의 경우 보상금액 지급을 위한 합리적 조정절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가 되겠습니다.

목적과 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업무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동 위원회에서 재임용 재심사, 소송업무 및 대학의 재임용 심사 기준에 대한 타당성 판단의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항제3호의 경우 그 취지는 재임용 재심사를 하면서 당해 대학의 과거 재임용 심사 기준이 타당했었는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나 법문의 내용만으로는 재심특별위원회가 재임용 재심사와 무관한 현행 대학들의 재임용 심사기준까지도 그 타당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재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재심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면 충분할 것이므로 제2항제3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재심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임용 탈락 교원이 이미 교원 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 또는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재임용 탈락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동 법안에 의한 재심특별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특별재심’으로 칭하고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관할 법원에 하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동 법안에 의한 재심특별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법원이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의 처분성을 부정하여 재임용 탈락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이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바, 과거 법원의 판결이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다툴 수 있다고 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법원의 판결이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다시 다투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한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입법 형성의 자유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하면 판례의 변경이나 법률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동 법안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청구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명시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입법례가 아닐 수 있으며 실제 법조항과 연관해서 볼 때 특별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물론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비록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되었어도 이미 법원의 종국판결을 거친 후에는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게 되고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판결례를 살펴보면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재심의 사유를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심특별위원회는 재임용 재심사를 함께 있어 교육, 학문 연구의 객관적인 자료와 공정한 절차에 근거하여 재임용 재심사가

이루어졌는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대학에서 해당 대학 소속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적정한 절차를 구비하지 않고 있었으며 법령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없었던바, 교육, 학문 연구의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 근거하였는지까지를 심사기준으로 하는 경우 동 법안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에 있어 교육, 학문 연구 등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하면 재임용 탈락 결정이 정당하였다고 결정될지라도 절차의 미비에 의하여 전원 인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임용 심사에 있어 공정한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재임용 거부로부터 대학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제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재임용 탈락에 대하여 재임용 재심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재임용을 인용해야 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임용 재심사에 있어 공정한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재심결정의 효력 및 결정전치주의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재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재임용 탈락 교원은 즉시 복직하고 재임용 탈락 시부터 계속하여 재임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심특별위원회의 부당 결정으로 복직과 임금청구권 등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에서는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되어 재임용 재심사 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결정이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당’ 결정을 받지 못한 재임용 재심사 신청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입장에서는 소송에 의하여 다투 기회 없이 전심절차로써 재심특별위원회의 재심에 곧바로 기속되게 되는 점이 있는바, 동 법안이 과거의 사건에 대하여 특별 절차를 마련하는 특별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임용 재심사 과정에서 양방 당사자의 의견 진술권이나 쟁송권을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국회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의사일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까 지연되면서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국회법에 우선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하는 11개 법안이 있습니다. 11개 안건을 보면 수능시험 부정행위 관련 보고 이외의 10개 안건은 과연 예산 안건이 산적해 있는데 예산국회인 정기국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 안건 상정에 대해서 물론 여야 간에 합의하였다고 하지만 위원장님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49조제1항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의사일정을 협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이렇게 분명하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번 의사일정에 있어서—이미 다 제시되어 있었어요—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할 당시에 위

원장과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소속 교육위원회와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는 것은 간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동의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안의 상정 시기를 규정한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은 “정기회 기간 중에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에 한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하겠다는 10개의 법률안 중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부수되는 법률안이 있습니까?

또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2003년 2월 27일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대학 교원에 대한 사전·사후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개정 사유가 발생한 지 이미 2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다음 연도 예산안 처리에 부수되는 법률안만 상정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교육부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정기국회 기간 중인 11월 1일 개정법률안을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를 경시하는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기는커녕 여야 간사 간의 합의라는 미명하에 우리 국회가 스스로 국회법을 위반하고 행정부의, 그야말로 통법부로 전락하려는 느낌을 줍니다. 현 상황이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등 6개 안건도 죽었는데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다음 연도 예산안 처리에 부수되는 법률안이 아닙니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이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할 수는 있지만 국회법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할 때만 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간에 아끼도 합의해 온 것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동의 안 했습니다. 물론 제 혼자…… 전체 안이지만 검토보고를 들어 봐도 과연 이것

이 정말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야말로 간사 간의 협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규정들이 무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견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국회법 제49조와 제93조의2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에 의사일정을 꼭 협의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면 타당한 면도 없지 않지만 오래간만에 양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를 마쳤고 또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 이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운,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야 될 법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도 처리하는 데 비록 하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치유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점을 감안해 주셔서 모처럼 양당 간사의 협의를 거친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존중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고 다만, 김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교섭단체 간사 협의 시에 유념하셔서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는 바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교육부 문제는 안 짚어서 그렇지 11월 1일 개정법률안을 이렇게 한 움큼 갖다 내서 그야말로 분석할 겨를도 없이 검토 자료가 나왔습니다. 전문위원이 여기에서 검토보고를 말씀했지만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합니다.

교육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장 황우여 교육부에서도 새로운 국회법에 의하면 정기국회에는 예산 부수법안을 위주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법안은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마치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사안을 처리할까 합니다.

또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본 회의의 오후 개의가 늦어졌음을 양해해 주시고 그 점도 양당 간사 간에 추가로 원만하게 합의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만하고도 성실한 입장에서 계속

법안을 심의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시간이 짧아서 4개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다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4개 법안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정성호 의원이 낸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 위한특별법안은, 과거에 기간제 교원이 재임용에 탈락되었을 때 재임용에서 왜, 어떻게 탈락되었는지 항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항의 자체가 법원에서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서 현재에서 적어도 재임용에서 탈락된 기간제 교원들이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왜 탈락되었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권리마저 갖지 못하게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적어도 기간제로 탈락된 교원들의 재심 기회를 갖게 해 주는 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다른 당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에 보면 ‘부당하게 재임용에 탈락된 교원들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의 적절한 보상수단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보상금액 지급을 위한 합리적 조정절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교육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정성호 의원 발의라서 교육부장관한테 묻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립대학의 경우에 보상금액 지급을 위한 합리적 조정 절차와 동시에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정부에서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정부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군현 위원 문제가 없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직하고 임금청구권하고 연관되면

재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대학교원이 즉시 복직하고 재임용 탈락 시부터 계속해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선 재임용 탈락을 전제로 해서 이미 교수를 채용한 경우 교원의 중복 문제가 하나 발생하고, 또 하나는 재임용에서 탈락된 이후에 교수로서의 임무 수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제공한 것으로 의제되어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규정의 제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군현 위원 그래서 법 자체는 그런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잘 되는 선에서 이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이 부분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4개 법안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여기 2페이지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헌법재판소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이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작년에 내림에 따라서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부분적으로 예산문제하고 연관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일시에 폭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할 몇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

(황우여 위원장, 이주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군현 위원 지금까지 공립은 초중고 대학 교원까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해 왔는데 사립은 그동안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닙니다, 사립학교도 계속 해 왔습니다. 공·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교원에게 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

서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국·공립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규정이 되어 왔습니다.

○이군현 위원 나머지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및 재임용 절차, 그리고 교육감 추천 및 교대 입학자 농촌 지역에 의무 근무, 이 정부안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개 법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신이 옳다고 보고 개정안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주호 이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은 재임용 여부를 첫째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둘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셋째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등 그 심의기준이 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여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법 제111조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에 입각해서 ‘그 처분이 있음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두 번째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제32조의2 신설은,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대도시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를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교원지원율이 낮아서 미달사태가 발생하는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동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해당 지역 자체에게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지원 방침을 세울 수가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이 법 규정하고 직접 연관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마는 그런 점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의 소급적용 여부라고 생각됩니다. 소급적용은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대상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때문에 미발추 등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1975년 이후에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 교원에게 일괄 복직이 아닌 재임용·재심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동 법안 제4조는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한 자 중 소송 및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통해서 재임용 탈락이 결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률로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든가, 좀 모양새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괜찮습니다. 일괄 복직인 경우에는 위배됩니다마는 재임용·재심사 기회를 부여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법 제8조 재임용탈락결정 관련서류 멸실, 법인 해체 등으로 적법·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 재심특별위원회는 어떻게 적법·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재임용·재심사 기준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포함하는 경우에 이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숙 위원 관련서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법인 해체 등이 있을 경우에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관련서류가 멸실될 경우에,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는데요.

○김영숙 위원 그것이 또 강구가 되어야 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검토해 보아야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보상문제입니다.

동법 제5조(퇴직·사망자의 재심청구)입니다. 제5조제2항에 상속인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동법 제9조(재심결정의 효력)입니다.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탈락교원은 즉시 복귀하고 재임용 탈락 시부터 계속하여 재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탈락 교원의 명예회복 차원입니까, 아니면 보상이 주된 내용입니까? 그리고 물질적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즉시 복직하고, 재임용 탈락 시부터 계속해서 임용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세 가지 문제점 외에 재임용 탈락자가 439명입니다. 재심사를 거쳐서 복직이 결정되었을 경우 그동안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교육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바람직한 수업방법이라든가 아이들의 인자라든가 심성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연계적인 교육이 되려면 일정 기간 교사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계신지, 재교육 방안이 검토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런 방안이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분들이 교직에 죽 있었던 분이고 당분간 나가 계셨을 때에도 제 생각에는 자기 전문적인 영역에서 계속 열심히 전공을 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휴 교사가 한 2, 3년 후에 복직할 때 교육을 받고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교사들이 원래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안 한다 하는 것은, 지금 한 해에 교육과정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니, 이

분들은 교수입니다. 대학교수이고 전공인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 물려가 있는 동안에도 아마 일종의 연구활동을 계속 했다고……

○김영숙 위원 그러면 교수활동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재교육 문제는 아직 저희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보통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재교육을 받고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수라고 하지만 자기가 그동안에 직장 안 다녔는데 어떻게 항상 책을 보았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서 형평이 맞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주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최순영입니다.

뒤늦게나마 법안이 상정된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관련 법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위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4개월 전에 임용 만료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교원이 재임용 신청을 하면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의사 및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 절차들을 예외규정 없이 강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그렇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러나 제54조4 규정을 보면 기간제 교원의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기간제 교원을 임면할 수 있는 해당 사유를 교원의 파견·연수 또는 휴가 등이나 법상으로 엄격히 보장된 육아휴직이나 해외유학이나 노조전임자 종사자가 있을 경우, 보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아주 단기간의 휴가·휴직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이주호 위원 그래서 동 개정안처럼 아무 예외 없이 이 법적 절차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을 하면 90일 육아휴직이나 노조전임자 후임이나 또 파견·연수 등 단기간 그 자리를 보충할, 말 그대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4개월 전 통보와 그 이하의 절차들을 다 거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두 개의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알기에 이것은 교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와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수임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주호 위원 그러면 교수의 경우에는 이런 단기간의 고용이 불가능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글쎄요, 교수의 경우 단기간 계약제는 예외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기간제 교원의 경우 아주 단기간인데 4개월 이전에 임용만료 사실을 통지한다는 것이, 교수의 경우에도……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 경우에는 전임교원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원하고는 맥락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4개월 전에 임용만료 사실을 통지한다는 것이 기간제 교원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기간제 대학교원으로 전임교원인데, 예컨대 전임강사나 조교수 같은 경우에 몇 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을 뿐이지, 몇 개월짜리 기간제 교사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물론 그렇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반드시 전임교원이라는 것은 아니지요, 기간제 교원이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는 충분히……

단기간의 기간제 교수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글쎄요, 그것은……

○이주호 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

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다음에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 위한특별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제9조(배심결정의 효력)을 보면 “재심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탈락교원은 즉시 복직하고 재임용 탈락 시부터 계속하여 재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그렇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 조항은 소급입법이 됨과 동시에 해당학교법인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게 되는바, 단순하게 즉시 복직 및 재임용 탈락 시부터 계속하여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는가는 당시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위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보다 정치하게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당시의 재임용에는 부당하게 탈락되었다 하더라도, 가령 75년이나 80년 사이에 부당 탈락한 사람이 2004년 현재까지 계속 재임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계속하여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본 특별법의 당사자들은 이 조항을 민사소송 차원에서 일종의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온전한 배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라는 구성요건이 성립해야 하나 당시 사립학교 등에서는 재임용을 부당하게 탈락시켰다는 도의적 책임이 있기는 하나 법률상 절차를 어긴 위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부당한 탈락을 구제할 수 있는 적정한 손실 보상은 물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위원회에서는 부당하게 탈락된 교원에 대해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들을 정하도록 해서 각 사안별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보다 형평에 맞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재심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데 역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임금청구권은 민사소송으로 가서 화해 결정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제3조 재심특별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규정한 각호의 내용 중 세 번째, 대학의 재임용 심사 기준에 대한 타당성 판단을 재심특별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특별위원회는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 업무를 위해 설치된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대학의 재임용 심사 기준 같은 경우 단순히 과거 재임용 대상자뿐만 아니라 개정될 3개 범안의 대상이 될 재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특별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전반적인 심사 기준의 타당성을 판단토록 하고, 재심특별위원회는 해당 대상자인 과거 재임용 탈락자들이 처한 상황과 이 심사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만을 심사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대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님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동감입니다.

○이주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제3조제4항을 보면 “위원은 학식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동법 제11조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 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준용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와 달리 위원 기준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식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굳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지

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 점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법은 사실 특별법인 관계로 공청회가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위원 진수희입니다.

우선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는 10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가 일요일에 온 것 같은데 48시간 이전에 제출되어야 되는 그 요건은 겨우 갖췄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일요일도 위원들이 나와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스스로 우리가 통법부를 자임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다음부터는, 물론 국회법에 48시간이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여야 간사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정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 위한특별법안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하는 현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서 이러한 법안을 만든 취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각 조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제출한 사립학교법증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 제53조의2제4항과 제53조의2제5항에서 제8항까지 신설된 조항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

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불합치 결정의 이유로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제출한 교육공무원법증개정법률안을 보면 법안의 주요 내용 중 안 제32조의 2 교육감 추천으로 교대 입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의무 복무 규정 신설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되었듯이 이 조항은 이미 강원도·충북·충남·전남 교육청 등 4개 교육청에서 각 지역 교육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는 현재 농어촌·도서 지역의 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에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교원 수급 체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구 이동이 대단히 많은 나라인기 때문에 지역별로 교원 수요를 정확히 전망해 낸다는 것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본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급 체계만 갖고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진수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교원 수급 체계라고,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까지를 감안한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망이나 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런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마지막으로 정부 제출 법안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증개정법률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 제출안인 사립학교법증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증개정법률안에 이미 재임

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재임용 거부에 대한 재심을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명칭을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하는 것은 오해의, 당사자들의 명예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칭 부분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시면서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권철현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5항과 관련하여 최순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소위원회 심의 때 감안하고 토의자료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 위한특별법안은 제정법률안입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해서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은 양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에 위원님들께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병문 소위원장은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상정의건

(22시18분)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법률안들은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부수 법안이 아니므로 위원회의 의결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의결하여야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와 관련된 법률안인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단병호·현애자·이영순·심상정·노희찬·권영길·조승수·강기갑·천영세 의원 발의)

7.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복기왕 의원 발의)(복기왕 의원 외 150인 발의)

8.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단병호·현애자·이영순·심상정·노희찬·권영길·조승수·강기갑·천영세 의원 발의)

9. 初·中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조배숙 의원 발의)(조배숙 의원 외 150인 발의)

10.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최순영 의원 대표발의)(최순영·단병호·현애자·이영순·심상정·노희찬·권영길·조승수·강기갑·천영세 의원 발의)

11.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지병문 의원 발의)(지병문 의원 외 150인 발의)

(22시20분)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병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등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최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입니다.

저는 오늘 동료 위원 여러분께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과 이와 관련해서 초·중등교육법개정법

률안과 고등교육법개정법률안을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온 국민의 사립학교법 개정의 열망이 저 국회 담장을 넘어서 이곳 국회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제안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국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들이 진정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켜 나가는 길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많은 부분을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32%, 고등교육의 86%를 사립학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로 인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립학교의 문제가 결코 사립학교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교육 전체, 교육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립학교의 재정 구조는 준공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립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은 국가재정지원이나 학생들의 납입금, 등록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재단전입금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재정이 부족해 법정 기준의 법인 전입금마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학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사립학교는 마치 사적 재산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장 1인 권력을 뒷받침해 주는 법인 이사회를 통한 전횡적 학교 운영,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비리와 부패, 교권 탄압 등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학 비리 관련 청부 살인이 벌어지는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 즉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학교 운영에 있어서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못한 것이 오늘날 사립학교의 현실입니다.

사립학교의 이러한 현실이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비민주적 사립학교법에 있습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수십 억을 횡령해도 다시 갚기만 하면 면죄부를 부여하고 온갖 부정부패 비리를 저질러도 2년이 지나면 학교로 복귀 가능하고, 친인척·족벌 운영을 양산하는 이사회 구조를 보장하는 사학재단보호법, 사학비리 양산·면죄부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학교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제1의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과 민주성의 기반 위에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건학이념도 꽂피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사립학교와 법인 운영의 민주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국민의 기대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의 국회는 정쟁과, 개혁의 외연 속에 출발하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 17대 국회에서마저도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에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순간은 사립학교를 비리의 온상, 독단의 개인 공화국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진정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이 지켜지는 곳으로 남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의 혼명한 판단으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의 길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마음 깊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복기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왕 의원 열린우리당의 충남 아산 출신 복기왕 의원입니다.

먼저 이런 역사적인 개혁 법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영광이 저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독점적·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들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의 전횡 가능성성이 상존하고 사학 비리와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만 해도 사립대학에서 횡령 또는 부당한 운영으로 649억 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총 2000억 원이 넘는 돈이 비리 사학 법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임원 간 분쟁이나 이사회 부실 운영, 회계 부정 등으로 임시 이사가 파견된 학교만 해도 총 17개교나 됩니다.

1990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법인이사회로 집중시키고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주체들을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학에서는 끊임없이 비리와 분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6대 국회에서 88.2%라는 절대 다수 국민들의 지지 속에 발의되었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제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비리 분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법인경영과 학사운영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관여를 배제하며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며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사립학교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이 원안대로 이번 회기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의원 열린우리당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학이 공공성에 기초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왔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양태를 보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에 근거해서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이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자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법률안은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 외에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새로이 법적 기구화하고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도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대표 및 지역대표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에 그 구성원의 참여와 자치를 확대시키고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지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의원 존경하는 황우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대학에 있어 교수회, 학생회 및 직원회를 법적 기구로 규정하고 이들의 대표 및 동문 대표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내부 구성원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자치기구로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와 함께 이들의 대표와 동문 및 지역 대표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고 둘째, 대학평의원회로 하여금 학칙의 제·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 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 정원의 증감 및 학과 또는 학부의 개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류충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충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4년 9월 10일 최순영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안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14조에서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에 두는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7인의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바 “개방형이사제”를 새로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3분의 1 정도 반영되고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짐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등 사학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개방형이사제 도입의 위헌 여부 논쟁과 관련하여 합헌과 위헌의 주장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헌이라는 주장의 논거는 첫째, 사립학교 역시 국·공립학교와 유사한 공공성이 요구되므로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된다고 보입니다.

둘째,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이므로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가 3분의 1이라 하더라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되며 이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 되므로 위헌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학교 운영상 중요한 내용은 이사회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하므로 개방형이사제가 도입되더라도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자의 교육권이나 학교법인의 재산권은 침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주장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양자의 주장은 사학이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점이라든지 사학이 교육에 대한 자율성·전문성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자율성 중 어느 측면을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사학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합헌이라는 입장이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경시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요건 강화에 대해서, 안 제20조의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2에서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사유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계고의무화’ 요건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 교직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부당 노동행위를 하였을 때 등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할 수 되어 당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시정요구일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이사 전부 해임 후 이사 선임에 대한 안 제25조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이사회가 전원 임시이사로 구성되었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이사 전부 해임 후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과 함께 정책상·법리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교직원 인사 운영 관련해서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53조의2입니다.

학교의 장이 아닌 교직원의 임면에 대하여 현행 제53조의2에서는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서 안 제53조의2에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사립학교 교원 임명에 있어서 금품수수, 친·인척 임용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바, 사립학교 교원 임용을 보다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 그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검토사항 중의 하나인 당연퇴직, 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를 완화한 점이 되겠습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당연퇴직을, 제73조의3은 직위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16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퇴직조항을 삭제하거나,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 직무상 발생한 부정비리나 비교유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 외의 형사사건을 배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복기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부분은 최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이사정수를 현행 7인에서 9인 이상으로 늘리고, 제3항에서는 9인의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항을 신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3분의 1 정도 반영되고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짐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의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등 사학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개방형이사제 도입의 합헌과 위헌의 주장 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인 감사제도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감사의 임기가 2년이고 중임의 회수에는 제한이 없음에 비하여, 안 제20조제3항에서는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제21조제5항에서는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에서는 학교법인이 결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제도의 개정은 사학의 재무 및 회계의 신뢰성 확보와 책무성 강화를 위해 현행 감사관련 조항을 보다 엄격한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 선임의 제한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제2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정수를 현행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개정하고 있는바,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일부 사학의 친·인척에 의한 분열과 분쟁 및 이로 인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8항 최순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의 법제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학교에 학생의 자치조직으로 학생회를 두되,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의2에서는 학교에 교사회를 두되, 교사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의3에서는 학교에 학부모회를 두되, 학부모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그간 법적인 조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교사회 및 학부모회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학생회에 대하여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회·교사회 및 학부모회를 법정화하는 문제는 단순히 당해 기구를 법정화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회 및 학부모회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종래 이사회의 권한사항인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및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감사 중 2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사립 초·중등학교의 의사결정 체계를 변경하게 되는바, 사립학교제도 개선을 위하여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안 제32조에서는 현행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하여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이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국·공립학교와 같이 심의기구로 설치하고, 이사 및 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의사결정 구조를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발전기금의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2조제3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조배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제4항에서는 당해 학교의 교사로 구성하는 교사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학교자치기구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1조제5항에서는 당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보호자로 구성하는 학부모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회와 함께 학교자치기구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합헌과 위헌의 주장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헌이라는 주장은 초·중등교육법에 교사회 학생회 직원회 학부모회의 등의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헌 여부는 대통령령에서 학내 기구의 기능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 법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학교자치기구들의 기능을 기술하면서 기존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기

능을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으로 전환하고 있는 데, 이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34조 및 제34조의2에서는 이를 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포함 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이나 이를 기구 중 교사회 및 학부모회의 구성·운영을 학칙으로 정하게 할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법체계 부분으로서 학교자치기구의 법문화 부분은 좀더 학교자치기구의 정의나 다음 2·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통합 등의 방법이 법문화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최순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생회·교수회·직원회의 법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학생회를, 안 제15조의2에서는 교수회 및 직원회를 법제화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그간 학교규칙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법적인 조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학생회·교수회 및 직원회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대학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학생회·교수회 및 직원회를 법제화하는 문제는 단순히 당해 기구를 법제화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의사결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변경하게 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의사결정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안 제27조의2에서는 학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학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당해 학교의 교수회 대표·직원회 대표·학생회 대표 및 학교대표로 대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위원 정수는 9인 이상 19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학내 인사로 한정하기보다는 동창회 대표·지역 대표·고등교육전문가 등 외부 인사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는바, 외부 인사를 포함시킬 것인지, 포함시키는 경우 어느 정도의 비율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강사의 교원 신분 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학교에 두는 교원에 대학강사를 포함시키고 있는바, 비정규직 시간강사에게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신분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간강사를 대학강사로 하여 이를 제14조에 규정함으로써 정규직 교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현행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감안할 때 일용 타당한 점은 있습니다.

다만, 시간강사를 제14조의 대학교원으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강사의 정원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별 재정 사정에 따라 그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병문 의원님께서 발의한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생회·교수회·직원회의 법제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회 교수회 직원회를 법정화하고, 학생회 교수회 직원회의 대표와 동문 및 지역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대학평의원회를 두어 학칙의 제정·개정,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의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교수회 및 직원회를 법정화하는 문제는 단순히 당해 기구를 법정화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의사결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변경하게 한다는 점에서 역시 입법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서 학생회 교수회 직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대학평의원회와 학생회 교수회 직원회의 관계 등 학생회 교수회 직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안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대학평의원회는 교수회대표·학생회대표·직원회대표 및 동문대표 15인 이상으로 하되,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당해 구성원을 학내 인사로 한정하기보다는 동창회 대표·지역 대표·고등교육전문가 등 외부 인사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는바, 외부 인사를 포함시킬 것인지, 포함시키는 경우 어느 정도의 비율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7조의5에서는 학교자치기구에 대한 구성·운영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지금 까지 언급한 논리대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기타 회의 구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차별을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등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하되, 각 쟁점사항에 대하여 각계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황우여 위원님들께 지난 일요일 중에 검토보고서가 배부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김영숙 위원께서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보고서가 48시간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도록 위원장이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가 충분히 되셨는지 걱정됩니다마는 앞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토의할 시간을 더 가질 것을 양 교섭단체 간사간에 협의한 점을 감안하셔서 대체토론 순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양 교섭단체 간사들의 협의에 따라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시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이군현입니다.

우선 첫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사학의 육성 정책과 법안 마련에 있어서 정부가 안을 만들고 또 사학 육성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정부가 사학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와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학법 개정을 위한 입장을 제대로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사학법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내셨지만 크게 보면 사립학교법 개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 학운위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안 각각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지적을 하지 않고 큰 흐름에 대해서만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출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들의 목적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사학법 개정의 주 목적이 비리 사학의 척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사학의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사학의 지배구조 또는 지배세력을 교체하는 데, 또는 경영권에 지나친 개입을 하려고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을 학운위에서 추천하겠다든지, 징계위의 3분의 1을 학운위에서 추천하겠다든지, 인사위의 3분의 1을 학운위에서 추천하겠다든지, 내부 감사 1인을 학운위에서 선임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적에 회계의 투명성 측면보다는 지배세력을 바꾸려고 하는 데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 문제는 사학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 구성원 간의 화합보다는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조장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사회라든지 학부모회라든지 학생회를 법제화함으로써 초·중·고 같으면 교총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한교조라든지 기준에 구성되어 있는 교원단체와 의사결정의 최고 기구인 학교 이사회와의 마찰, 갈등, 역할의 모호성들이 중첩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학 운영의 자율성 강화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선발하는 권한이라든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권이라든지, 학교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의 등록금을 책정할 것이냐에 대한 등록금 책정권이라든지를 사학의 3대 자율권이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종교를 견학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사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에 의한 학교 선택권의 보장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사학의 자율성이 거의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리 사학은 철저하게 처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학의 견학정신을 살리고 교육의 질을 높여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잠재능력을 키우고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을 배출해서 공립과 다른 특수성을 살려 나가는 것이 사학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의 의결방법이라든지 소집방법이라든지 감사의 수라든지 지금 법인에서 규율·간섭하지 않고 있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세부적인 것에까지 사학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아주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학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학교라는 공공재로서 갖는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동시에 공립과는 다른 특수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사학개정법의 내용과 개정 방향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교육부가 제정한 정관에 의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학정관에 대해서도 완화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 등등 사학 운영의 자율성에 오히려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성 강화에 결여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예를 들면 예산·결산 공개를 의무화한다든지, 법인의 감사증명서도 첨부할 수 있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의무화한다든지, 또 과거에 교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리문제가 일부 사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공개채용을 의무화한다든지, 제가 시간관계상 다 열거는 할 수 없지만 사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번에 아주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사립학교에서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학운위를 심의기구화하겠다는 안을 보면, 심의하는 내용과 그 사학법인의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내용을 구분하겠다고 하지만 이 구분은 실제로 학교를 운영해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선을 명확히 긋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학에는 이사회라고 하는 의사결정기구가 있지만 공립은 의사결정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립의 경우에는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학교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학운위가 심의기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은 이사회가 존재하고 있어 그 역할과 기능이 얼마든지 중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것은 자문기구화하는 것이 옳지 심의기구화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첨예하고,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해관계집단과 국회가 함께 참여해서 국회교육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학생의 질도 높이고 학교의 자율성도 높이고 학교의 투명성도 높이고 학교의 민주성과 공공성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학법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거치고 소위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 핵심쟁점은 개방 이사제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쟁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두 가지 측

면에서 크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공공성과 자율성의 새로운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립학교법이 일종의 기본법이 된다고 할 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사학을 더욱더 우량사학, 전전사학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공성과 자율성의 어느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이 양자의 새로운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공공성을 제고해야 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재정적 측면입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지금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그리고 사회적 기부금에 의해서 대부분 운영되고 있고, 법인의 전입금이 극히 미세한 상황 속에서 일종의 공적 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법인 감사를 개방해 내야 하고 법인의 이사회를 개방 이사회로 확대하는 문제의식들이 짜릿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변화와 전진입니다.

과거의 우리 교육은 주로 권력적 측면으로부터의 독립,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사장 1인 지배구조의 법인을 개혁하고 개편하는 것이 동시에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운영위원회에서의 추천을 통한 개방 이사회의 참여, 교무·학사 운영에 있어서의 법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해 내는 측면들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두말할 필요 없이 투명성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되어 있는 문제고,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원취임승인 취소요건이라든가 비리 법인에 있어서 기존 임원들의 재·선임 과정에서의 제한,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들을 강화하는 문제의식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자율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권력으로부터의 교육의 독립을 획득하는 것 못지않게 교육주체들이 사학에 있어

서의 자치와 참여라는 측면들에서 또 다르게 우리는 자율성의 측면들에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심의 과정에 운영위원회가 참여하는 것, 법인이사회에 운영위에서 추천된 분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자치와 참여, 교육주체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학이념들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의 기본적인 토대에 기초해서 그 고유성이나 특수성의 측면들이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되었듯이 종교적 측면이나 지역에서 지성적 측면에서 독특한 사학의 전학이념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로지 독특성, 특수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보편성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난 시기에 규정되었던 사립학교법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 조화점이 오늘의 시점에 맞게 새롭게 재조정되어야 하는 정당성은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부수적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교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문제들도 민주성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리더십의 순환성을 고려할 때, 특히 장기간 연장하면서도 독점성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교장선생님한테 법인의 권한을 일정하게 위임할 수 있는 것들은 권장조항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에서의 분권성 측면들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전형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도 민주성의 영역에 같이 포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회의록 공개 같은 것들도 공식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징계위원회에 학운위가 추천하는 것이 지배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원지위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개정하는 사립학교법에 일종의 사립학교와 관련한 모법, 기본법의 의미를 두고 별도로 전전사학 육성 대책이나 우량사학특별법 같은 것들을 제정하면서 기본요건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리라고 봅

니다.

예를 들면 재정적 자립성이 높은 학교, 비리적 발이나 감사에서의 지적 부분들이 수년간 없는 학교, 그리고 분규가 발생하지 않았던 학교에 있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도를 일정하게 차별화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요건을 갖추면 잘하는 것에 상응하는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접근방식도 고려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환기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점을 다시 모색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기본법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확보하되, 기본요건을 갖춘 정도와 그 이상의 교육적인 가치를 창출하는가에 따라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전사학 육성대책이나 우량사학특별법 같은 제도적 방안들을 강구하면서 쟁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위원 지금 사립학교법이야말로 우리 교육계를 첨예한 이념대립으로 양분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계만 양분될 뿐만 아니고 우리 17대 국회 교육위가 사실 많은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이 이렇게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주원인은 교육부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책임 있게 사립학교법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갔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16대 때 내내 문제가 됐었고, 17대에 들어와서도 강한 여론의 집중을 계속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교육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서 교육부도 안을 만들었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주호 위원 제가 몇 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지적이 있는 감사 부분입니다.

사립대학들의 감사가 중요합니다. 비리 사립대학들을 보면 사실 소규모 사립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교육부가 지금 감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대학들은 대규모 대학들입니다. 또 소규모 대학들 중에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은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안 편성 때도 제발 좀 감사를 확실히 하도록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겠다는 얘기까지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왜 감사 기능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민간기관으로부터 민간회계감사를 확충하는 안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감사……

○이주호 위원 장관님께서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계속 질의를 하면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무슨 방안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행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내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주호 위원 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편성해 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운위의 법제화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운위가 기능을 하게 된 지 10년째 되고 있지요? 그런데 학운위의 기능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아직까지도 교육계에 정착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아직까지 학운위에 참여할 관심이 적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이주호 위원 사실 학운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부가 교육청 평가할 때도 학운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많은 배점을 주고 한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학운위 도입을 제가 했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제가 현장에서 듣는 바로는 교육부에서 학운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의지가 상당히 많이 퇴색되어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학운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잘하는 데도 있고 조금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8년 동안 학운위의 보강을 위해서 꽤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뉴질랜드 같은 케이스를 아시겠습니다마는 뉴질랜드에서도 자율적인 학교를 투머로우 스쿨(tomorrow school)이라고 그러지요. 개혁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학운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뉴질랜드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대규모의 전국적인 캠페인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학운위에 참여해야 되고, 특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학교의 감시 기능, 여러 가지 참여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운위라는 것이 제도화는 되어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이 많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학운위는 기본적으로 학교 공동체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예컨대 교육부는 인프라랄까 이런 것을……

○**이주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인프라입니다. 학부모들이 아직까지도 학운위에 참여해서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말 학부모들이 나서서 발 벗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정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다음으로, 이군현 위원께서도 많이 지적하셨고 또 이인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자율성 부분입니다. 자율성 부분은 책무성과 같이 강조가 되어야 사학 발전의 양 날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무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학이 뻗어 나갈 수 없고 또 자율성을 많이 주려면 자율성에 걸맞은 책무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많이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립형 사학 6개교가 시범 실시되고 있고, 3개년 시범 실시가 끝난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시범 실시니까 당연히 하셨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평가보고서가 지금 나왔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내년 말에 종합적인 평가보고서가 나오기로 했습니다만 반년 앞당겨서 내년 6월까지 종합적인……

○**이주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차 연도에 설립된 자립형 사학 말고 1차 연도에 설립된 사학들은 이미 3년이 됐거든요. 3년 시범 실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 끝났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섯 학교지요. 내년에 끝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개개 학교, 한 학교 한 학교의 결과를 저희들이 발표하기보다는 여섯 학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러시지 마시고, 사실 시범 실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여섯 학교밖에 실시 안 했기 때문에 3년 되는 대로 금방금방 평가를 하셔서 또 공론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국민에게 저희들이 처음부터 공지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평가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주호 위원** 국민에게 공지한다는 그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 약속을 더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앞당기시고 공론화를 빨리 해서 필요하다면 자립형 사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율에 관한 문제는 종교의 자유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학생들이, 학교들 중에 많은 학교들이 종교와 관련된 학교들입니다. 그럴 경우 물론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최대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종교 자유와 학교 선택 문제로 최근에 논란이 된 적도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가능한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과목을 의무화, 강제화하기보다는 복수의 종교를 신봉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율과 관계해서 사립학교법에 보면 사학의 정관에 기재돼야 될 사항들을 세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정관은 정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학들이 조금 고치려고 해도 정관 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학을 옥죄는 규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정관을 간소화하고 단순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정부가 많은 일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공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많은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으나마는 이번 17대 국회가 책임지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책임 있는 결론을 내는 데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한편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이 상당히 기쁜 마음이고요. 또 17대 국회 교육위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논회 위원 존경하는 한나라당 이주호 간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약간의 진통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사립학교법중개정 법률안이 오늘 상임위에 상정된 점은 역시 교육 위원들이 진정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중한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의 합의 정신을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사학은 매우 독특한 형성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년대 이후 개발 독재 시기 산

업계의 기능 인력 요구, 70년대 수출 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해 가는데 생산적 노동력의 상대적 고급화를 위해 교육에서 많은 학교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사학 설립이 교육 재정의 보완적 의미를 가지면서 당국은 무분별한 인가를 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기업의 요구와 교육열을 일정 정도 해소하는데 기여했으나 무분별하게 설립된 사학을 방치함으로써 사학을 설립자의 소유물처럼 인식하게도 했습니다.

90년대 중반에도 5·31 교육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대학 설립 준칙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각종 자율화 조치는 부실한 사학을 난립하게 만들었고 사학 경영이 자율화로만 받아들여져서 사학 경영자들의 전횡과 이로 인한 사학 분쟁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사학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면서 많은 역할과 공헌을 해온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조성된 사학은 학교 운영경비 이외 60% 이상이 학생 납입금에 의존하고 법정전입금마저 납부하지 못하는 곳이 60%를 넘을 정도로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격하게 사학을 조성하면서 사학 경영자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수혜와 특혜를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동시에 사학은 국공립학교와 별 차이를 지니지 못하고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학생 배정과 교육과정 등을 적용받으며 염연히 공교육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성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때로는 정부의 지원, 때로는 정부의 묵인 속에 지금까지 양적 팽창을 해온 사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질적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질적인 변화는 뚜렷한 전학 이념 아래 자율적이고도 창의적인 교육, 학교 구성원이 모두 주인이 되어 민주사회에 걸맞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진출하는데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압적인 과거 시대에는 정부의 시책을 지나치리만큼 충실히 따라오며 자유를 스스로 포기했던 사학 경영자들이 지금에 와서는 협의의 자율성, 즉 법인의 인사권이라든지 회계재정권, 규정제·개정권 등에 만족하고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사학의 자

율은 학생 선발권이라든지 학교 정원의 자율 조정권, 또 자율적인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권, 등록금 자율 책정권 등 여러 가지 광의의 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자율이 사학에 활기를 불어넣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사학 정책은 점차 이러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성과 투명성입니다. 그리고 민주성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그 기반하에서 부여되는 자율성이 진정한 사학의 자율성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사회 구성과 인사권에 대한 사학 경영자의 자율만을 강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학의 형성 과정에 비추어 현재의 모습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구논회 위원님의 지금까지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구논회 위원 사학이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중학교는 23%, 고등학교 45%, 전문대학 90.5%, 4년제 대학은 85%, 상당히 엄청난 비중이거든요. 이렇게 사학의 비중이 큰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아마 거의 유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논회 위원 그렇지요. 저는 우리나라 사학이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교육의 공공 영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학은 민주성에 있어서도 대부분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육 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에만 사학의 횡령 또는 부당한 운영으로 650억 원 정도, 또 최근 5년간 총 2000억 원이 넘는 돈이 비리 사학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문제가 생겨 임시 이사가 파견된 학교 수만도 37개 학교나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성에도 큰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부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교육부 감사 담당 공무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40 전후 한 숫자입니다.

○구논회 위원 40 전후 숫자가 지금 몇 개 대학을 감사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한몫에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학교 이상 어렵습니다.

○구논회 위원 감사를 담당해야 되는 전체 대학 수가 몇 개나 되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전문대까지 합해서는 400여 개에 가깝습니다.

○구논회 위원 설립 이후 지금까지 감사를 한번도 못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반쯤 됩니다.

○구논회 위원 이 정도로 수백 개의 대학과 전문대학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또 교육청은 이런 상황이 교육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인원만 늘려서, 감사 담당 공무원만 늘려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구논회 위원 이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도적 보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늘 사립학교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교육부 입장은 사학의 공공성·자율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제가 볼 때 여야를 막론하고 투명성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따라서 공공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논회 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학에 활력을 불어넣을 자율성은, 즉 인사권이라든지

회계재정권이라든지 규정의 재·개정권뿐만 아니라 학습 편성권, 또 정원 조정권, 수강료 책정권, 학생 선발권 등이 사학의 공공성이나 투명성·민주성이 갖춰진 다음에 부여된다면 사학의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대체로 제가 동의합니다만 전후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의미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논회 위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서 사학의 공공성·민주성·투명성이 보완된다면 건전 사학들에 대한 진흥이라든지 또는 앞에 열거한 광의의 자율성 등을 확보해 주기 위한 연구라든지 법적 또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법적·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건전 사학을 부추기고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자율성을 더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식인데 예컨대 재정자립도가 좀 높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율성을 훨씬 더 많이 부여해 드리고 싶은 심경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학교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 이외에 건학 이념이라든가 종교적인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계속 지켜야 할 학교의 경우에는 건학 이념을 성취하는 길목을 더 닦아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건전 사학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연구하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건전 사학 육성과 자율성 확보 방안들에 관해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교육부도 많은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복기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

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계셔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참고하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인사와 관련해서 교원 임용권이 현재 재단 이사회에 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보면 교원 인사와 관련해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적게는 몇천만 원, 많게는 몇 억대를 재단의 발전기금으로 내야 교사로 채용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어 왔습니다.

교원의 임용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재단에 교원 임용권을 그대로 갖게 한다면, 그동안에 봐도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교원에 임용함으로써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본인이 없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그동안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경영권 지배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을 완전히 빼앗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학교 문을 닫겠다라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는데 사실 사립학교법 개정은 더 이상 교육으로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데 원칙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립학교가 개인의 사유재산인가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을 보면 한 푼도 안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0.4%, 어떤 지역은 0.37%로 되어 있고 0.58%, 이렇게 1%도 안 되는 지역이 세 곳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볼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교사 인건비도 국가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유재산으로 주장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사학의 비리는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막자는 것이고 사립학교법 개정이야말로 공공성과 민주성, 그리고 누가 이것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민주적으로 아예 투명하게 하고 공공성을 제고하자는는데 이것이 왜 개악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의 사

회를 위한 개혁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공청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립학교법은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16대에도 법안이 올라왔던 적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기왕 의원님 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복기왕 의원 교사임면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처음에 이 개정안을 준비하고 저희 당내 교육 위원들과 교육부 관계자분들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토론을 거쳐 왔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장에게 교사임면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걸렸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를 법안에서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어차피 이사회에 의해서 지명된 학교장이라면 그에게 인사권을 주는 것, 물론 이것이 제도적으로 진일보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도적으로 교사 임면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개채용을 통하고 채용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조리를 씻는 것이 오히려 위헌의 시비도 없앨 수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교사임면권은 그대로 이사회에 주되 채용의 과정과 절차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예,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유기홍 위원 혹시라도 보충질의를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게 되면 12시가 되고 자동 산회될 것 같아서 미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16대 때도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당시 한나라당의 김원웅 의원 안이 발의되었는데 사실 16대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16대 임기를 끝낸 바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17대 국회 개원 후, 물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소위 구성도 제대로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2월 4일 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72%의 국민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는 등 그동안 언론이나 관련 단체들에서 보여 준 관심 등 여러 가지로 보아서, 또 밤 12시라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언론인들께서 취재하시는 데서도 보듯이 정말 모든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상임위가 속개되지 않은 가운데 겨우 다섯 분 정도 밖에는 대체토론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리고 높은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토론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오늘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정기국회는 12월 9일이면 마감하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12월 9일까지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지만 12월 8일 내일은 오전 10시 12차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에 대한 상정과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임위가 촉박하거나 중요한 문제라면 오전에 열리는 것도 이미 전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하고도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립학교법, 오늘 다섯 분밖에 토론하지 못했던 사립학교법에 대한 토론을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13차 회의를 열어서 계속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 11시 48분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에 대한 법률안의 대체토론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오늘은 대체토론을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추후에 이 법률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마련하여 대체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병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지병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

십시오.

○**지병문 위원**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대체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토론이 미진하게 되었고 또 대체토론을 하려면 우리가 새로 의사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잡는 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지금 유기홍 위원님은 9일을 얘기하셨는데 9일이든, 아니면 만약 12월에 또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합의를 해서 대체토론을 마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위원장 황우여** 이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호 위원** 여러 분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사실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이 드디어 상정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말 첨예한 대립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논의합시다. 그리고 여론에 떠밀려서 너무 조급하게 결론짓기보다는, 저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위가 초선들이 많고 또 굉장히 의욕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대다수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번에 지병문 간사님과 제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요, 또 앞으로 일정도 저희들이 슬기롭게 합의를 해서 좋은 일정을 잡고 좋은 토론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오늘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기대와 또 한편 우려 속에 오늘 사립학교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지금 자정이 거의 가깝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법은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 특히 사립학교의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의 기반 위에서 우리 여야도 합의하고, 또 많은 좋은 의견으로 훌륭한 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늦은 밤까지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또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도 이제 기왕에 대체토론이 시작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국가의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

○出席委員(18人)

구 논 회	권 철 현	김 영 숙	박 창 달
백 원 우	복 기 왕	안 상 수	유 기 홍
이 군 현	이 인 영	이 주 호	정 봉 주
조 배 숙	지 병 문	진 수 희	최 순 영
최 재 성	황 우 여		

○請暇委員(1人)

정 몽 준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류 충 현
전 문 위 원	천 병 호

○政府側參席者

교육인적자원부

부 총 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 병 영
차 관	김 영 식
차 관 보	서 남 수
기 획 관 리 실 장	구 관 서
학 교 정 책 실 장	윤 웅 섭
인 적 자 원 관 리 국 장	이 종 갑
학 교 정 책 심 의 관	류 영 국
교 육 복 지 심 의 관	정 석 구

【報告事項】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박찬석 의원 대표발의)

(11월24일 박찬석 · 이시종 · 변재일 · 조경태 · 이미경 · 백원우 · 조정식 · 김형주 · 우원식 · 문희상 · 유인태 · 정청래 · 임종인 · 오제세 · 김충환 · 정갑윤 · 권경석 · 안택수 · 신학용 · 박상돈 · 최규성 · 선병렬 · 김한길 · 김맹곤 · 한병도 · 천영세 · 단병호 · 강기갑 · 김낙성 · 김종인 · 신중식 · 유재건 · 제종길 · 장향숙 · 김혁규 · 한명숙 · 염동연 · 유승희 · 홍창선 · 박명광 · 임인배 의원 외 10 인 발의)

11월25일 회부됨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이상락 의원 대표발의)

(11월25일 이상락 · 강기정 · 김교홍 · 김석준 ·

김춘진 · 김태년 · 문병호 · 복기왕 · 우상호 ·
유필우 · 이상경 · 이종걸 · 이철우 · 이해봉 ·
장복심 · 장향숙 의원 발의)

11월26일 회부됨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11월26일 복기왕 · 지병문 · 구노희 · 백원우 ·
유기홍 · 이인영 · 조배숙 · 정봉주 · 김기석 ·
최재성 · 강기정 · 김부겸 · 김성곤 · 김원웅 ·
김진표 · 김춘진 · 김태년 · 노영민 · 문석호 ·
문학진 · 박기춘 · 박순자 · 박찬석 · 송영길 ·
신국환 · 신중식 · 안민석 · 양승조 · 양형일 ·
엄호성 · 염동연 · 원혜영 · 우상호 · 오시덕 ·
오영식 · 오제세 · 유승희 · 이경숙 · 이기우 ·
이미경 · 이상락 · 이원영 · 이철우 · 이호웅 ·
임종석 · 임채정 · 제종길 · 주승용 · 조경태 ·
최용규 · 최성 · 한병도 · 한명숙 의원 발의)

11월29일 회부됨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12월3일 이주호 · 권철현 · 맹형규 · 박세일 ·
박순자 · 박재완 · 박찬숙 · 박창달 · 안상수 ·
안택수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윤건영 ·
이근식 · 이윤성 · 이해봉 · 이혜훈 · 정문현 ·
최구식 의원 발의)

教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12월3일 이주호 · 권철현 · 맹형규 · 박세일 ·
박순자 · 박재완 · 박찬숙 · 박창달 · 안상수 ·
안택수 · 엄호성 · 원희룡 · 유기준 · 윤건영 ·
이근식 · 이윤성 · 이해봉 · 이혜훈 · 정문현 ·
최구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6일 회부됨

○關聯議案回附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문화
상 의원 대표발의)**

(11월23일 문희상 · 정성호 · 강봉균 · 강성종 ·
곽성문 · 김명자 · 김성곤 · 김영춘 · 김원웅 ·
김진표 · 김태년 · 김희선 · 문병호 · 문학진 ·
박기춘 · 박세환 · 박순자 · 배기선 · 백원우 ·
심재덕 · 안민석 · 염동연 · 오제세 · 우윤근 ·
원혜영 · 유선호 · 이근식 · 이경재 · 이계진 ·
이기우 · 이미경 · 이상락 · 이시종 · 이원영 ·
이은영 · 이인기 · 이종걸 · 이철우 · 임종인 ·
임채정 · 전재희 · 정세균 · 정장선 · 조정식 ·
최성 · 최재성 · 한명숙 · 허천 · 황우여 의원
발의)

11월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地方公務員敎育訓練法中改正法律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11월26일 박기춘 · 최규식 · 강창일 · 심재덕 ·
조성래 · 홍미영 · 원혜영 · 양형일 · 우제항 ·
유인태 · 노현송 의원 발의)

11월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
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12월1일 심상정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단병호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12월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